

전략연구 2015-30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정원옥

발 간 사

지난 2014년에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수립된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각 시·군은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과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과 연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시·군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전반적으로 '시·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 내용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행정·정책 입안자들과 지역 문화전문가들에게 '시·군 시행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와 계획 수립 지침 등 중요한 참조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최영화 박사를 비롯한 공동연구진 정원옥 박사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 및 연구심의위원, 연구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배경과 목적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수립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이 2015년에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7월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2015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시·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시·군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실태 조사결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도 내 시·군이 전혀 없어, 도·시·군의 행정·정책입안자들과 지역의 문화전문가들에게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 내용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의 의의를 밝힌다. 둘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워크숍에 참석하여 기본계획 실천방안과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 담당자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계획 수립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미 계획을 수립한 타 시·군의 사례 조사 워크숍을 통해 시사점을 발굴해 참조했다. 그 밖에 외부 문화정책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2. 지역문화 정책여건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로, '지역'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 행정권역 뿐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공간, 경제공간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최근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기준으로 17개 특별·광역 지자체 중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자체가 7개(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며 충청남도도 그 중 하나이다. 이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역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청·장년층의 삶의 인식 변화로 지역으로의 귀농귀촌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문화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과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사업을 대규모로 지역에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이관과 포괄 보조금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강화해나가고 있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이관을 통해 지역협력형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기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의 역량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있고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주로 추진되면서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문화인력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문화

의 공급과 생산을 매개가 선순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크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인력과 지역문화를 발굴,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기반시설도 노후화 되어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문화재원 또한 열악하고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분야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자원과 문화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가 잔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향후 지역문화가 도약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방안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현황에 대한 인식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조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당진시의 경우 부분적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도 계획 및 타 시군의 진행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군이 9개, '수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시·군이 4개, '수립 준비 중'인 곳이 1개(보령시)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②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조례 현황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시·군이 '조례 있음'(46.6%)이라고 답했으며 '조례 없음'이라고 응답한 시·군은 6개(40.0%)이며, '조례 제정 중'인 시·군과 '조례 마련 예정'인 시·군은 각각 1개(6.7%)로 조사되었다.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한해 3년 이상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중점과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 중 각 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와 시·군 문화여건 상 과제별 우선적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과제별 중요도 면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과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순이었다. 또한 과제별 필요도 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과제가 '지역문화 발굴창조'(4.2점)이고, 다음으로 '지역문화 격차해소'(4.1점), '지역문화 역량강화'(4.0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충남의 15개 시·군 행정 담당자들은 대체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지역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준비/필요사항

각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활발하게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행 예산(국고 확보)'(14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다음으로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13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군이 충청남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13표),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12표),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10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문화 현황 조사'(13표)와 '계획수립 예산 확보'(12표), '주민 문화수요 조사'(12표)로 나타나, 이를 위한 실질적 준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6개, 40.0%)과 '지역문화기반 구축'(26.7%)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기반 구축'이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군 계획 수립의 일반적 과제

① 지역문화진흥법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정의 취지가 제 빛을 받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지역문화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정책입안자의 인식과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법의 효용에 대한 행정·정책입안자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질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효용 차원에서 본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라는 네 가지 주요사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사안과 문제점 및 한계를 공유하면서 이 법이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에 어떤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또 그 효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시설”로 통칭되는 활동공간의 제공은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시·군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문화복지의 실현을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게 해준다.

셋째,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성·전문성·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문화전문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계적 인력양성·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지역문화가치로 발굴하여 문화도시, 문화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진흥의 실질적인 실천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된 시·군에서는 문화재단이 시행계획을 입안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방문화재단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정책전달체계를 수평적·순환적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법률 및 상위계획과 체계 연관성 및 정당성 확보

시·군의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률 및 상위체계와의 연관성을 마련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역 특색”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둘째,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마지막으로 광역시·도 시행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행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시·군일수록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

③ 지역별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 수립

○ 누가,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충남 시·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질적 주체이자, 민간협력 파트너인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세 곳에 불과하다.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만 놓고 보아도 충청남도 내 시·군의 지역문화역량은 편차가 심하다. 천안시, 당진시처럼 문화재단,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골고루 갖춰 지역문화역량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 넘는 시·군에서는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만 있어 지역문화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적용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공하기란 어렵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입안자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누가’ 시행계획을 짤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역 문화역량의 형편에 맞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각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담당 주체와 행정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민관 협력 파트너가 되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한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의 문화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문화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는 현장답사의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문화지표조사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현황 조사와 주민의 문화적 수요 조사는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역문화지표 조사결과의 활용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역문화지표 조사다. 지역문화지표란, 지역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지역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의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다. 그것은 추상적인 지역문화의 구축과 발전정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본 틀이며, 보다 효과적인 지역문화정책 방향정립의 토대가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정책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더 많이 개발하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지역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①정책의 기본방향,

②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④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①정책의 기본방향을 잡는 일과 ②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시행계획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충남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 문화자원, 문화기반의 크기는 제각각이다. 모든 문화지수에서 큰 값을 보임으로써 지역문화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많다. 지역별 문화환경의 큰 편차는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하나의 매뉴얼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지역의 실정과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문화지표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여 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④ 타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업들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문화 벤치마킹의 추세가 심화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결과 위주의 지역문화가 팽배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시행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업들 중 의미와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새롭게 수립되는 시행계획 속에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도시재생사업, 관광사업, 문화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이러한 계획들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추후 예산 확보나 계획의 실질적 추진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중점을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3)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군의 과제

①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방안

지역의 문화 관련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단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서 법의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달체계와 협력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평적이고 순환적인 협력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써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와 수립지침을 제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도·시·군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과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예산 확보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의 제공에 있다면, 충청남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수립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실상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겠으나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만큼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방향타가 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적, 방법론적' 제언과 함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 구성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첫째, 지역문화재단과 공신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계획 수립 절차 상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전문인력,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타 시·군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고 변용한다.
넷째, 읍·면·동 단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반영한다.

2)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안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비전, 정책방향, 추진과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현황과 주민들의 문화수요가 파악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시행계획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비전 및 방향을 정하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선정할 때는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시행계획에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의 핵심적 요소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이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홉째, 시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화방향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시행계획은 화려한 비전이나 거창한 목표보다는 쉽고 간명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비전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지역문화 정책여건	10
1. 지역문화정책 여건 변화	10
2. 지역문화진흥법	17
3. 중앙정부 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1
4. 충청남도 시행계획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28
5. 타 시·군 시행계획 수립 사례 : 춘천시·원주시 사례	34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41
제3장.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주요 현황	45
1. 충남 시·군 지역문화 역량 현황	45
1) 전문인력 운영 및 양성 실태	45
2) 생활문화 진흥 실태	51
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실태	52

2. 충남 시·군 지역문화 격차 현황	54
1)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	54
2) 문화접근성 실태	66
3) 문화재원 현황	69
3. 충남 시·군 지역문화 자원 현황	70
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	70
2)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실태	72
3) 지역문화브랜드(문화도시·문화지구·문화마을) 현황	75

제4장.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방안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83
1) 조사 개요	83
2) 조사 결과	85
2. 시·군 계획 수립의 일반적 과제	99
3.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군의 과제	129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연구함의	132
2.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133
3.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	135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139
<input type="checkbox"/> 부록 1 : 설문조사지	141
<input type="checkbox"/> 부록 2 : 연구회의록	148
<input type="checkbox"/> 부록 3 : 지역문화진흥법	160

표 목 차

[표 I-1] 연구방법	4
[표 I-2] 연구 추진과정	4
[표 I-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표 II-1] 지역가치 발굴 사례	13
[표 II-2] 문화기반시설 증가 현황	14
[표 II-3]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16
[표 II-4]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과 원칙	17
[표 II-5]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성내용	20
[표 II-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목적	21
[표 II-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21
[표 II-8] '지역문화 역량 강화' 추진과제	24
[표 II-9]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과제	25
[표 II-10]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과제	25
[표 II-11] 과제별 추진기관	26
[표 II-12] 문화예술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0
[표 II-13] 문화유산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1
[표 II-14] 문화산업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2
[표 II-15] 문화관광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3
[표 II-16]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36
[표 II-17] 원주문화비전 2020 아젠다	38
[표 III-1] 공연단체 현황	45
[표 III-2]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46
[표 III-3] (사)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 현황	47
[표 III-4] 충남 시군별 문화예술 민간단체 현황	48
[표 III-5] 충청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48
[표 III-6] 충남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현황	49
[표 III-7] 충청남도 내 문화예술 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정원	50
[표 III-8] 생활문화센터 유형	51
[표 III-9] 충남 생활문화센터 지정 현황	52
[표 III-10]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현황	52

[표 III-11] 충남 지역 문화재단 현황	53
[표 III-12] 충남 문화기반시설 현황	54
[표 III-13] 인구 십만 명 당 기반시설 수	55
[표 III-14] 전국 대비 충남 공공도서관 현황	56
[표 III-15] 충남 시군별 도서관 수	56
[표 III-16] 충남 박물관 현황	57
[표 III-17] 전국 대비 충남 박물관 현황	59
[표 III-18] 충남 미술관 현황	59
[표 III-19] 전국 대비 충남 미술관 현황	60
[표 III-20] 충남 문예회관 현황	60
[표 III-21]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현황	61
[표 III-22]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62
[표 III-23] 충남 공연장 현황	62
[표 III-24] 충남 문화원 현황	64
[표 III-25] 충남 문화의집 현황	65
[표 III-26] 전국 대비 충남 문화의집 현황	65
[표 III-27] 작은영화관 사업 개요	66
[표 III-28] 충남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67
[표 III-29]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현황	68
[표 III-30] 시·군별 문화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현황	68
[표 III-31] 충남 시·도 문화예술 예산	69
[표 III-32] 시군별 지정문화재	70
[표 III-33] 충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 현황	71
[표 III-34] 산업유산 및 유휴공간 정의 및 예시	72
[표 III-35] 충남 시·군별 산업유산 현황	73
[표 III-36] 충남 시·군별 유휴공간 현황	73
[표 III-37]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민속놀이	74
[표 III-38]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개요	76
[표 III-39] 전국 문화도시·문화마을 현황	76
[표 III-40] 충청남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현황	77
[표 III-41] 충청남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내용	78
[표 III-42]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개요	79
[표 III-43] 충청남도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80
[표 III-44] 충청남도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내용	81
[표 III-45] 근대문화유산 재창조 자원화 사업 개요	82

[표 IV-1]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84
[표 IV-2]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85
[표 IV-3]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현황	87
[표 IV-4]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88
[표 IV-5] 충청남도 시·군 2015년 지역문화진흥 관련 기 추진사업 현황	92
[표 IV-6] 시행계획 관련 법 조항 주요내용 요약	106
[표 IV-7]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31	109
[표 IV-8] 충청남도 시행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111
[표 IV-9] 시행계획 관련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명시한 법률의 주요내용	112
[표 IV-10] 충남 시·군의 지역문화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수	113
[표 IV-11] 시범적용 지역문화지표	115
[표 IV-12] 지역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목록	117
[표 IV-13] 지역문화지수 값이 '0'이상 도출된 충남 시·군	118
[표 IV-1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125
[표 IV-15] 생활문화센터 유형 및 구성	126
[표 IV-16] 생활문화센터 운영주체 및 인력운영 모델	12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추진 흐름도	5
〈그림 II-1〉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범위	10
〈그림 II-2〉 지역문화진흥 3대 기본법	18
〈그림 II-3〉 지역문화진흥법과 계획 간 위계	18
〈그림 II-4〉 지역문화진흥계획 전달체계	22
〈그림 II-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23
〈그림 II-6〉 충남의 문화비전	28
〈그림 II-7〉 충남 문화비전의 가치	29
〈그림 II-8〉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4대 목표와 10대 전략	29
〈그림 II-9〉 충청시문화재단 정책방향	35
〈그림 IV-1〉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절차	84
〈그림 IV-2〉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85
〈그림 IV-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미비 이유	86
〈그림 IV-4〉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 수립 현황	87
〈그림 IV-5〉 추진과제별 중요도 조사 결과(대분류)	89
〈그림 IV-6〉 추진과제별 중요도 조사 결과(중분류)	89
〈그림 IV-7〉 추진과제별 필요도 조사 결과(대분류)	90
〈그림 IV-8〉 추진과제별 필요도 조사 결과(중분류)	90
〈그림 IV-9〉 중앙정부 기본계획 유관 시·군 2015년 추진사업 현황	91
〈그림 IV-10〉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96
〈그림 IV-1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필요사항	97
〈그림 IV-1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시·군 사전 준비사항	97
〈그림 IV-1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98
〈그림 IV-14〉 지역문화진흥법의 효용과 핵심가치	104
〈그림 IV-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107
〈그림 IV-16〉 지역문화지수 도출 결과-충청남도	116
〈그림 IV-17〉 SWOT 분석의 사례-충천시문화재단	121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요구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제4항)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충남의 현실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실행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6월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광역시·도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의 계획을 반영해 기초시·군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과 <문화비전>이 지난해 7월에 선포됐으므로, 이와 연계한 시·군 차원의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필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세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반영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여부 평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 지

자체가 문화취약지역과 문화소의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사업을 추진·확대할 예정이므로, 각 시·군은 적극적으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와 취약한 문화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 내 시·군이 전혀 없어, 행정·정책입안자들에게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의 의의를 밝힌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의의와 시행계획 수립 시 이점과 활용성 등을 제시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문화진흥법」과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항목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현황을 조사하여 실제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군의 지역문화진흥 유관 계획의 기존 수립 현황을 조사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성화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5년 이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충청남도의 문화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지역문화진흥법」 및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과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시·군 차원의 시행계획이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도시·문화지구·문화마을 등 도시계획이나 지역재생을 위한 여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이며, 시간적 범위이자 분석의 기준연도는 2015년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지역문화정책의 여건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문화현황에 대한 분석,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지침 제시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 계획 검토 및 분석
- (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주요 현황 조사
-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대한 시·군 담당자 인식조사
- (4)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연구법 외에도 연구과정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문화담당자,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간담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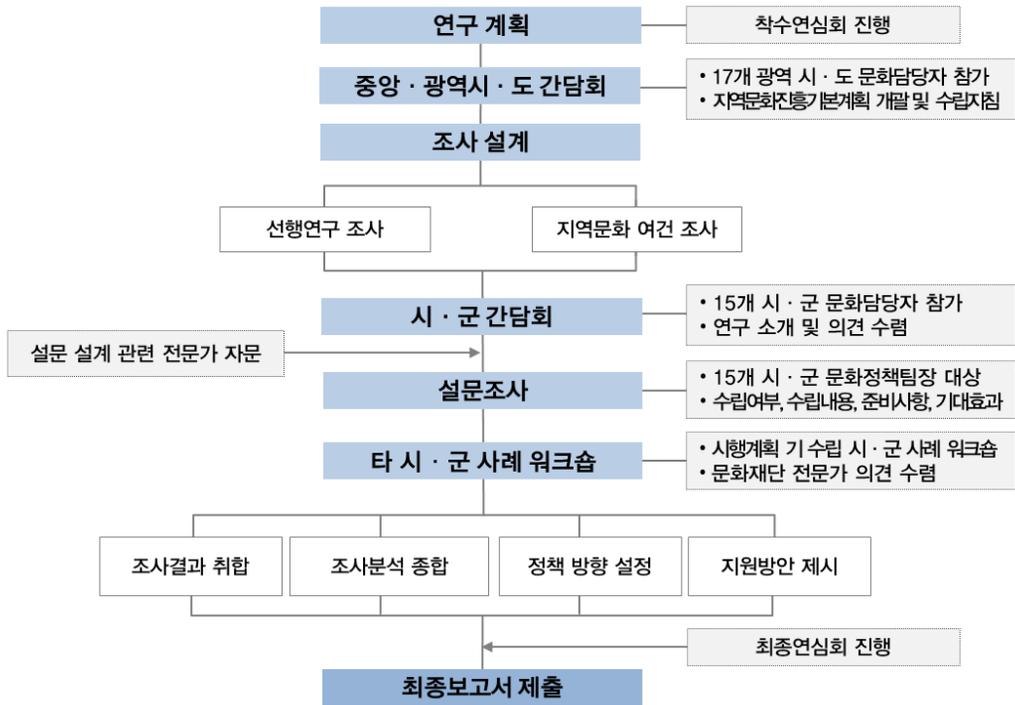
[표 1-1] 연구방법

관련 문헌 고찰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개념과 의의 ◦ 지역문화정책 여건 변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법률, 조례 ◦ 기본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관련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인력, 문화기반, 문화시설, 문화자원 - 문화도시·문화지구 현황 ◦ 지역문화 진흥 관련 기존 및 유관계획 조사
전문가 자문·협의 및 연구	인식 조사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 자문 ◦ 외부 전문가 연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정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담당자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시·군 공무원 문화담당자 대상 - 시행계획 수립 준비 상황 및 인식·수요 조사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및 문화전문가 인식 조사

[표 1-2] 연구 추진과정

- 2015.07.01.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 시작
- 2015.07.08.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 착수연심회
- 2015.07.10.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 워크숍(세종청사)
- 2015.10.07.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 시·군 간담회(충남도청)
- 2015.10.15.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 자문회의(충남연구원)
- 2015.10.21~11.05. : 충남 15개 시·군 문화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 설문조사
- 2015.11.26.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타 시·군 사례 워크숍 - 전문가 워크숍(충남연구원)
- 2015.12.16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 최종연심회

〈그림 1-1〉 연구 추진 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첫째, 지역문화진흥조례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둘째, 지역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 셋째,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넷째,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다섯째, 지역 문화인력 양성체계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지역문화진흥조례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정상우, 2012)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2014)가 있다. 정상우(2012)의 연구는 지역의 예술문화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조례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 것

이 특징적이다. 한편 조광호(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령 구성을 위한 시행령 기초(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분석하고, 법의 시행과 관계되는 법률 및 지침을 검토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기관의 전국 현황을 소개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참고 및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계획은 조례나 시행령과 체계 연관성은 있으나 법률적 위계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의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2014년 7월에 발표된 「지역문화진흥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률, 기존계획과의 연관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로는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류정아, 2009)와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류정아, 2012)가 있다. 류정아(2009)의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한 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류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문화를 적용한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을 그리는데, 세부적으로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향, 지역문화인력의 정책적 지원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 연구는 큰 틀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문화 개발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문화기반을 진흥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정정숙, 2014)가 있다. 정정숙(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지역학'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지역학 연구기구 현황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이고 정책적인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충청남도 내 지역학 연구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학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활문화의 활성화도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전병태,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조현성, 2014),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2015)가 이에 속한다. 전

병태(2014)의 연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조명하고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지역의 재능 있는 문화봉사자를 활용해 문화자원봉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전문성 함양 교육,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성(2014)의 연구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조광호(2015)의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생활문화 활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연구적 개념의 규명과 범위 설정 및 기본 실행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에서 관련 정책들을 계발하고 추진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인력 양성체계 연구로는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김규원, 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김홍규·이상열, 2014)가 있다. 김규원(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제도적, 현실적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활동기관과 활동내용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홍규·이상열(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환경과 사례를 조사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과제로서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의 지정, 거버넌스를 통한 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출,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경력 및 전문성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양성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전국의 모든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에서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지역의 시행계획에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을 종합하자면,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령 초안이나 조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 시·군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법령과 조례, 상위계획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요소로서 지역학, 문화매개

인력, 지역문화시설 및 추진체계 등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개별적으로 연구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개별요소들을 종합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한다.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2015년 6월 23일에 확정되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시행계획의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외에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이자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유형	제목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선행 연구	지역문화 진흥조례 및 시행령 연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정상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진흥 조례의 의의 및 유형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현황 조사 ◦ 지역문화 진흥 조례의 특성과 한계 분석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의 주요 사례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활성화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관련 법률 및 지침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안)의 구성 및 제시
	지역문화 정책연구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류정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발전추이 ◦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지역문화 진흥정책 비전과 과제
		지역문화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류정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정책의 추이, 추진환경, 추진토대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 문화를 적용한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 ◦ 지역문화시설 현황 및 향후 전망 ◦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향과 과제 ◦ 지역문화인력의 정책적 지원방향
	지역학 연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정정숙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의 개념과 가치 ◦ 지역학 연구와 사업 현황 및 사례 ◦ 지역학 활성화 방안

구분	유형	제목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생활문화 활성화 연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전병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의 담론 및 개념 등 ◦ 문화자원봉사(자) 개념 및 기대효과 ◦ 문화자원봉사자의 활동 현황 및 문제점 ◦ 생활문화 환경 변화와 문화자원봉사자의 역할 ◦ 생활문화시설 문화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양성방안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조현성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정책사업 ◦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의 필요성 ◦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방안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설명 ◦ 생활문화 활동조사 필요성 ◦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개념 규명 ◦ 연구 범위 설정 및 기본 실행틀
지역 문화인력 연구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김규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매개인력 개념과 분류 ◦ 지역문화정책 실행에서의 수요 ◦ 지역문화 매개인력 근무환경 조사 ◦ 지역문화 매개인력 근로여건 개선방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흥규 이상열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환경 및 사례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 체계화 방안
본 연구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연구	최영화 정원옥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방안을 제 시하는 최초의 연구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법률, 상위계획, 타 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문화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 의식조사 수행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참조 및 정책 적 활용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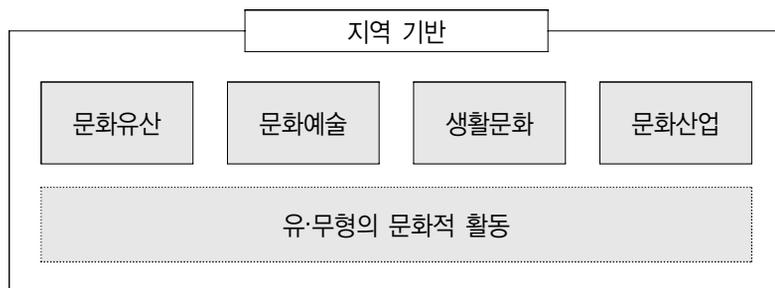
제2장 지역문화 정책여건

1. 지역문화정책 여건 변화

1) 지역문화의 정의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로, '지역'의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 행정구역 뿐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공간, 경제공간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지역 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그림 II-1〉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범위



지역문화에서 '문화'의 개념은 문화의 3가지 요소(생활양식, 지적·정신적·예술적 활동, 상징 체계)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가치관, 관습, 지역문화유산, 예술활

동, 의식주생활 등이 모두 지역문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것은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윤리도덕, 관습 등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로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가꾸어진 기층문화(풀뿌리 문화)이며, 공간적 개성(지역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연대성)을 지닌 문화를 의미한다(이종인, 1989; 홍석준, 2008: 3, 재인용).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것으로 지역 특성의 핵심요소이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데서 출발하므로, 지역문화는 지방자치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학순, 2003).

2)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¹⁾

(1) 지역의 인구 변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자료) 인구성장률이 ('06) 0.49 → ('10) 0.46 → ('14) 0.41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2015년 이전 전남·강원에서는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5%로 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예상된다. 2013년 현재 17개 특별·광역시 체단체 중 이미 노인인구가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광역자치단체가 7개(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주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 20년간 약 13배, 10년간 2.3배로 증가했다. 1993년에 76,374명이던 외국인 수가 10년 만인 2003년에는 437,014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다시 2013년에는 985,92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1) 본고의 2장 2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2015.6.23, 4~11쪽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 교통·통신의 발달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화 되면서 지역이 면적 개념뿐만 아니라 교통망을 따른 선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대도시 집중 등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문화공동체 형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전국단위 문화공동체의 출현도 가능해졌다.

(3)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수요 증가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삶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귀농·귀촌가구 수는 총 44,568가구로 전년 대비 37.5%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 귀농·귀촌가구 수인 4,067가구 대비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도 귀농가구가 11,144가구로 전년대비 2%가 증가한 데 반해 귀촌가구는 34,442가구로 전년대비 55.5%라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귀촌가구 중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청·장년층의 귀촌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귀촌가구 중 30대가 71.9%를 차지하고 40대가 55.2% 증가하여 청장년층의 지역 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지역문화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콘텐츠시장 규모는 2조2천억 달러로 매년 5.7%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http://www.pwc.com>). 더불어 지역문화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한 사례로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화마을, 유희시설 재생 사례,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사례, 지역축제 등이 있다.

[표 II-1] 지역가치 발굴 사례

유형	사례	
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디자인, 이천-공예, 전주-음식, 광주-미디어 아트	
문화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화천 감성마을, 광주 시화문화마을 등	
유희시설 재생	대구예술발전소	기능이 정지된 담배공장을 구도심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재창조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정선아트마인	버려진 폐탄광 시설을 문화예술 및 관광시설로 리노베이션하여 활용
	대구근대골목	도심의 근대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탐방코스(근대路의 여행)조성으로 한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도심활성화
지역축제	춘천마임축제	마임을 테마로 국제적 융·복합적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3)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

(1) 지역문화 재원의 변화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문화부의 24개 사업 356억 원이 201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역문화 관련 재정의 지특회계 전환과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포괄보조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예산편성 시 광역단위에서 지역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자율 배정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추진 및 관리 임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방 문예회관 건립, 비엔날레 지원, 공립도서관·미술관 건립 등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및 하드웨어 구축비용은 지특회계로 이관된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이관을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 실시(2010년~)로 지역 기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은 2013년 179억 원(서울 15.5%, 지역 84.5%)에서 2014년 222억 원(서울 14.9%, 지역 85.1%), 2015년 245억 원(서울 13.6%, 지역 86.4%)으로 증가했다.

그밖에 현금 및 현물 투입, 공간 임대, 문화재능 기부, 기업 메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및 자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2) 지역문화 기반시설 설립의 확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 공공 문화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기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역 13개, 기초 49개 등 총 62개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다.

한편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방문화원은 기초 시·군·구 단위에 총 229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표 II-2] 문화기반시설 증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총계	국·공립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2014	2,519	931	809	202	232	229	116
2010	2,127	760	655	145	192	228	147
2005	1,512	527	364	93	150	224	154

(3) 지역생활권 중심의 지역문화사업

생활문화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월평마을의 경우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주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문화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시민놀이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공간을 지원 중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역문화서비

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향유가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상영관과 동일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영화관' 사업,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벽화, 공공디자인 등 커뮤니티아트 활동을 통해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문화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와 함께 일상 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 등 문화공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도서관과 전시실, 체험공간, 공연장, 문화상품 판매 등이 융합된 다목적 문화공간과, 공원이나 역, 골목, 로비, 자치센터 등 일상공간을 문화공간화 하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4)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점

(1)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기초역량 부족

대부분의 지역문화 사업이 여전히 국가주도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되고 있어 민간의 자치능력 배양에 한계가 있고, 지원금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아서 지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을 차차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문화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우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관련 단체 등의 종사 인력은 약 34,000명으로 추정(비정규직 제외)되나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기획, 운영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 및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 의존적인 구조 속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문화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2) 지역 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

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도 지역 간 문화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수도

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의 문화시설 운영 자원 격차, 지역의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시설 가동률과 활용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 내에서도 문화격차는 존재한다. 시 단위인 도시지역과 군 단위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다. 무료공연 진행 건수를 보면, 도시의 경우엔 평균 75건인데 반해 농촌은 평균 13건에 불과해 약 6배의 차이가 있으며, 문화관련 교육 강좌 수의 경우에도 도시는 평균 149건인데 반해, 농촌은 평균 15건에 불과해 10배에 가까운 격차가 있다. 문화예술 관람과 교육 기회가 도시와 농촌에 상관없이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형편이다.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노후화와 프로그램 운영 미흡도 문화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의 가동률은 34.8%인데 반해, 도 지역 평균은 28.4%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국 220개 문예회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62개 (28.0%)(13 공연실태조사)에 달한다.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들이 많아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변화가 발생해 향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한 문화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2014년도 기준 특·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64.8%이나, 도·특별자치도의 경우 33.3%, 시는 36.5%, 군은 16.6%, 자치구는 31.1%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11-3]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50.3

* 자료 : 안전행정부(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특히 지역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분야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화재원의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준 16개 시·도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재원 비율은 2.01%(광역시 2.23, 광역도 1.80)이었으나, 2014년에는 16개 시·도 평균 1.78%(광역시 2.05, 광역도 1.50)로 하락했다. 향후 문화재원의 확충과 다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특화된 지역문화자원 발굴 미흡

지역문화 벤치마킹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성·독창성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 육성이 아닌 획일화된 지역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13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에 따르면, 644개 축제 중 벚꽃축제가 10개, 한우축제가 8개, 인삼축제가 7개, 사과축제가 6개 등 유사한 축제가 전국 지자체에서 다수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문화가 삶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관람객수, 방문객수,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성과 위주의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진흥법

1) 목적 및 의의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제1조(목적)에서 법의 목적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4]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과 원칙

목적 (제1조)	①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지정 ②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③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⑤ 문화국가 실현
원칙 (제3조)	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②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관련 논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기본법」에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림 11-2〉 지역문화진흥 3대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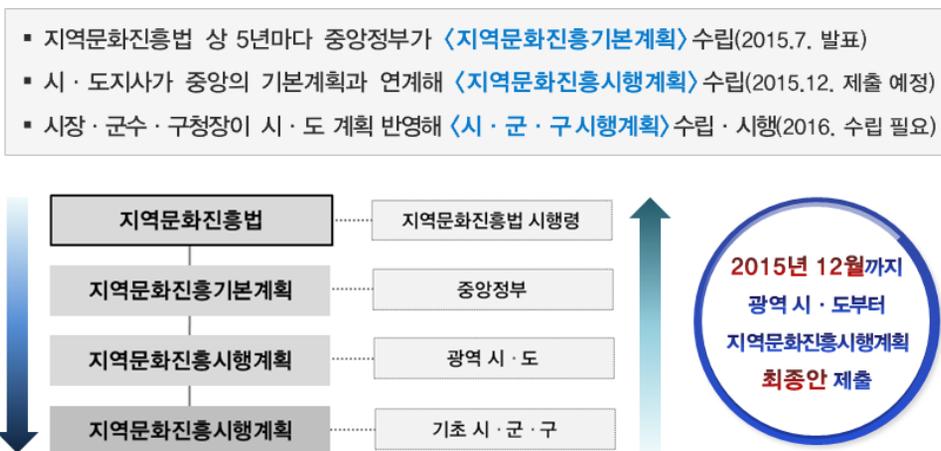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의 문화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조광호, 2014).

2) 법률과 계획의 체계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세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반영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3〉 지역문화진흥법과 계획 간 위계



3) 구성 및 내용

법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총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시책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은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의 문화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실시,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직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내용,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시된다.

제5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조직으로서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 재정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제6장 보칙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 제7장 벌칙에서는 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항을 명기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칙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5]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성내용

장 구성	조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제12조(협력활동 지원)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4장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부칙	제1~제4조

3. 중앙정부 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목적 및 성격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철학,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단위 중·장기 계획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문화의 역량 강화, 균형발전, 가치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하고 있다.

[표 II-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목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문화발전과 문화자치의 비전을 제시 ◦ 지역문화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 ◦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문화 육성 과제 제시
----	--

[표 II-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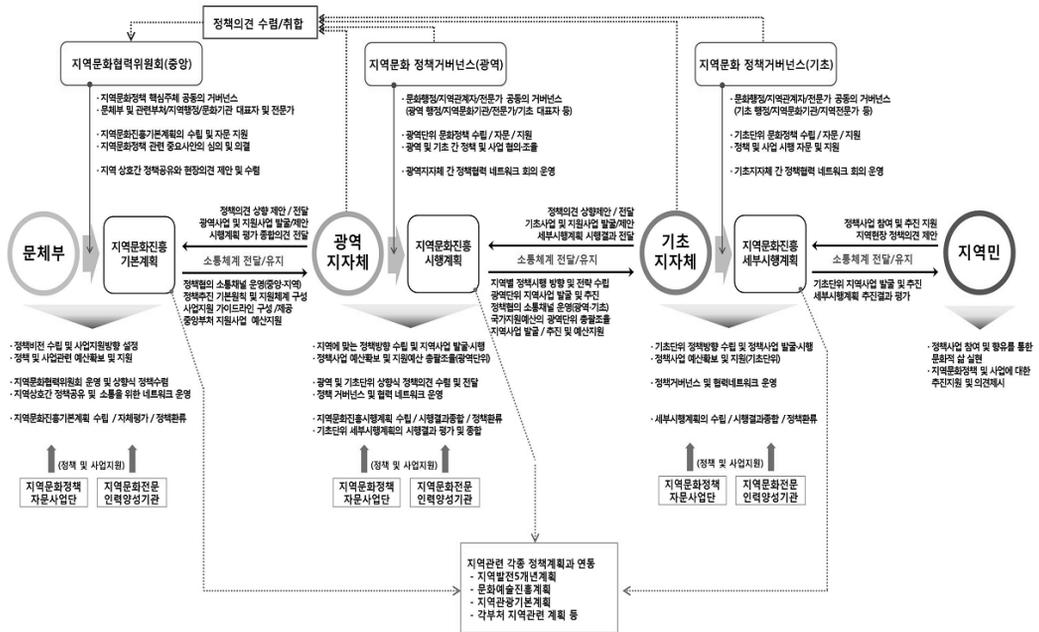
관련 법 조항	<p>■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근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달체계

새로운 지역문화 전달체계는 기존 관행처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식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정책관계 형성을 지향하며, 기초지자체도 ‘정책결정권자, 사업개발 및 추진주체, 지역문화진흥 지원주체’의 책무를 중앙정부-광역지자체와 동일하게 부여받는다. (김보성, 2014)

〈그림 II-4〉 지역문화진흥계획 전달체계



자료 : 조광호(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167쪽

3) 목표 및 추진전략

이병석·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개최된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2015.02.05)에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초안과 함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이 발표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라는 비전 아래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라는 3대 추진전략에 따라 9대 세부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II-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2쪽

4) 추진과제

(1) 지역문화역량 강화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지역문화 역량강화’ 과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한다. 둘째,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셋째,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8] ‘지역문화 역량 강화’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1-2. 생활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생활문화기반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3~21쪽 참조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두 번째 중점과제는 지역문화의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취약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행복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다.

[표 II-9]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인구변화와 수요 감안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2-3. 지역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4~28쪽 참조

(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세 번째 중점 과제는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로서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10]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루트 개발(점→선)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3-2. 지역문화 가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텐츠 사업 기반 마련
3-3. 지역문화 브랜드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29~38쪽 참조

5) 과제별 추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지역문화 관련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에서는 문체부, 안행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지역문화와 관련된 부처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따라 지역문화 행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연계해 추진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표 II-11] 과제별 추진기관

추진과제	추진기관
과제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문체부, 지자체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문체부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문체부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문체부, 지자체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문체부, 지자체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관련 법·제도의 정비	문체부, 지자체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문체부, 지자체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사업 지원	문체부, 지자체
과제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체부, 지자체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문체부, 지자체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지자체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 문화 지원방식 개선	문체부, 기재부
2-3-2. 협력을 통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문체부, 지자체

추진 과제	추진 기관
과제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문체부, 지자체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문체부, 지자체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문체부, 지자체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지자체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문체부, 지자체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3-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3-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체부, 안행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3-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문체부, 지자체
3-3-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3-5.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문체부, 지자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41~42쪽

4. 충청남도 시행계획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1) 목적 및 성격

2014년 7월에 발표된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종합 발전계획>(2008)의 활용기간이 경과되었고, 충청남도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도청 소재지가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되고, 배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됨에 따라 충청남도 내부의 문화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은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서, 시행기간은 5년(2015~2019년)이다. 국제적 여건,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의 문화예술 여건과 트렌드를 반영해 수립된 계획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과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 4개 부분의 진흥계획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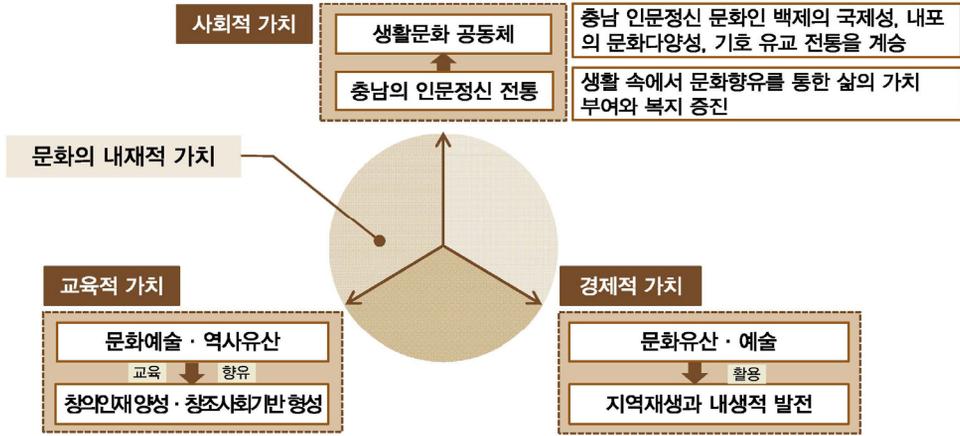
2) 비전 및 전략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은 “문화로 도민에 행복을, 충남에 미래를”이라는 비전 아래, ①충남의 인문정신 전통과 지역 생활문화에 기반 한 행복한 공동체 형성, ②문화예술·역사유산의 교육·향유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 창조사회기반 형성, ③문화유산과 예술에 산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지역 재생과 내생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림 II-6> 충남의 문화비전

충남 문화 비전	문화로 도민에 행복을, 충남에 미래를
keyword	충남 전통, 생활문화, 행복, 복지, 문화적 인력과 자본, 창조경제

<그림 11-7> 충남 문화비전의 가치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4대 목표와 10대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4대 목표는 첫째, 충남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창의성 확산, 둘째, 생활 속에서 문화의 보편적 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셋째, 충남의 인문전통에 기반한 문화정체성 확립, 넷째, 충남 문화유산과 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이다.

<그림 11-8>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4대 목표와 10대 전략



3) 부문별 추진과제

‘문화예술’ 부문 추진과제는 다섯 가지이며, 첫째, 충남의 인문과 전통을 살린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둘째, 충남지역 문화예술 매개역량 강화, 셋째,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넷째,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의 재창조, 다섯째, 문화예술 정책기반 조성이다.

[표 II-12] 문화예술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1. 충남의 인문과 전통을 살린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문화예술인 복지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 및 지원 ◦ 충남형 예술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충남문화예술인 가치 조망 및 아카이브 구축 ◦ 충남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1-2. 충남지역 문화예술 매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문화시설의 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활성화 ◦ 충남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 문화예술 기반형 기업 육성 및 지원
1-3.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생애주기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치유형 복합센터(힐링콘텐츠 센터) 구축 ◦ 문화나눔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문화 형성
1-4.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의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문화특화지역 조성 ◦ 문화예술자원 밀집지역의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 문화예술을 통한 일상공간의 재생 및 활성화 ◦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마케팅 활성화
1-5. 문화예술 정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 충남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 ◦ 충남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홍보단 조직 및 운영 ◦ 가칭‘충남문화예술지원 협의회’구성 및 지원 ◦ 충남형 문화지표 및 문화예술 정책평가체계 구축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문화유산’ 부문 추진과제는 여섯 가지로, 첫째,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둘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정비·복원 및 관리, 셋째,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창의적 활용, 넷째, 백제문화 재조명, 다섯째, 내포 문화자원 개발, 여섯째, 충남(기호)유교문화 선양이다.

[표 II-13] 문화유산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2-1.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문화유산 보존 사업 ◦ 충남 문화유산 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 충남 문화재 행정서비스 종합편람 발생 및 웹서비스 제공 ◦ 문화재 종합 아카이브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충남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활용사업 ◦ 충남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기록화 및 활용사업
2-2.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정비·복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문화재 사전예방 체계구축 및 정비 체계화 ◦ 미래지향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2-3.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창의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화 ◦ 전 세계를 향한 충남 문화유산 발신사업 ◦ 문화유산 활용 조직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충남형 창조와 활력이 공존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 충남 문화유산 민간 NGO 육성
2-4. 백제문화 재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및 합리적 보존 ◦ 백제왕도 복원을 위한 발굴·정비사업 ◦ 백제왕도의 경관 복원과 도성생활 콘텐츠 개발 ◦ 백제문화유산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2-5. 내포 문화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지역보부상 전통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사업 ◦ 내포지역 해양문화유산 기록화 및 활용사업 ◦ 내포지역 천주교 재조명 및 활용사업 ◦ 내포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및 역사문화콘텐츠개발
2-6. 충남(기호)유교문화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자원 조사와 편찬사업 ◦ 충청 유교문화권 건조물 자원조사 및 관리·활용사업 ◦ 충남(기호)유교문화 선양을 위한 유교문화 교육·홍보·활용사업 ◦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문화산업’ 부문 추진과제는 네 가지로, 첫째, 충남 지역문화기반 대표 콘텐츠 개발, 둘째, 문화융합 창조경제 허브 구축, 셋째, 문화산업 창의역량 강화 및 기술 양성, 넷째, 문화콘텐츠 향유 및 문화마케팅 확대이다.

추진전략별 과제로는 우선 ‘충남 지역문화기반 대표 콘텐츠 개발’ 부문에 충남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문화산업 활성화, 문화상품 개발, 문화자원 글로벌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문화융합 창조경제 허브 구축’ 부문 대표사업으로는 충남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 2015년 7월에 충남영상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산업 창의역량 강화 및 기술 양성’ 부문 추진 과제로는 ‘청년 창의인력 지역문화산업 일자리 연결 사업’ 등이 있다. 충남의 우수한 창의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연계 사업 모색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향유 및 문화마케팅 확대’ 부문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이 대표적으로 중앙, 도,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표 II-14] 문화산업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3-1. 충남 지역문화기반 대표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사업 ◦ 충남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활성화 ◦ 충남 문화유산 DB기반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창작 활성화 ◦ 충남 문화자원 글로벌 콘텐츠 개발
3-2. 문화융합 창조경제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문화융합 창작창의 지원센터 ◦ 충남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예술과 과학기술·전통이 융합된 Art & Technology 프로젝트
3-3. 문화산업 창의역량 강화 및 기술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융합 문화인력 클러스터링 프로젝트 ◦ 청년 창의인력 지역문화산업 일자리 연결 사업 ◦ 우수 기업 파트너십 지원 프로젝트 ◦ 충남 문화산업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지역 대학 특성화 사업 및 공동 프로젝트 지원
3-4. 문화콘텐츠 향유 및 문화마케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문화콘텐츠 마켓 설치 및 운영 ◦ 농어촌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사업 ◦ 문화예술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 ◦ 충남문화산업 창의콘텐츠 대회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문화관광’ 부문 추진과제는 네 가지로, 첫째, 역사·예술에 기반 한 거점 문화관광도시의 개발, 둘째, 인문정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셋째, 전통민속과 예술에 기반 한 특색 있는 축제·이벤트 육성, 마지막으로 전통음식과 특산품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이다.

[표 II-15] 문화관광 부문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4-1. 역사·예술에 기반 한 거점 문화관광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부여 역사고도 문화관광 도시조성 및 관광상품 육성 ◦ 천안아산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 및 거리축제 도입 ◦ 전통 및 문화예술에 기반 한 공연프로그램 육성 ◦ 내포·유교문화권 문화관광 마을 육성
4-2. 인문정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생활권 내 유무형 역사자원에 대한 문화향유 및 관광 명소화 ◦ 충남 역사인물과 전설·설화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자원화 ◦ 종교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명소화
4-3. 전통민속과 예술에 기반 한 특색 있는 축제·이벤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문화유산과 예술을 대표하는 메가이벤트 육성 ◦ 자율 민간주도형의 다양한 소축제와 이벤트 육성 ◦ 역사·문화예술형 거리퍼레이드 및 상설공연의 발굴·육성 ◦ 문화유산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예술공연 활성화 및 장소마케팅 사업
4-4. 전통음식과 특산품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정 관광식당업과 외국인 이용 식당의 정비 및 홍보마케팅 강화 ◦ 농가맛집·명품밥상과 연계한 한옥체험 관광상품 육성 ◦ 대표 농수특산물과 향토음식·전통주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및 판매 ◦ 충남 공예 관광기념품 개발 및 마케팅 ◦ 재래시장 및 5일장의 문화관광시장 육성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5. 타 시·군 시행계획 수립 사례 : 춘천시·원주시 사례

1) 춘천시 사례 : 춘천시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1) 계획 수립 배경

2008년에 출범한 춘천시문화재단은 2010년 무렵부터 재단의 역할, 지침, 방향을 큰 그림으로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2012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정책사업의 비중이 높아져 2013년에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인 춘천시 차원의 문화정책과 사업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전략>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의 일부로 수립되었다. 그것은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인 동시에 춘천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도시의 문화적 비전과 문화재단의 역할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3년 무렵까지 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사례로는 서울시, 경기도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춘천시의 계획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진행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던 시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이므로,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적인 계획의 골격 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의 대략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춘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와 문화재단의 역할을 담아냈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계획 내용

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은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크게 ‘사람’과 ‘도시’, ‘삶’에 두고, 그에 따라 기존사업을 재배열하고 빈틈들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르면, 춘천시와 춘천문화재단의 문화비전은 “창의적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조도시 ‘낭만춘천’”이다. 이는 자발적 창의성을 갖춘 개인과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이들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문

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함축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 (창의적 낭만시민 육성, 낭만적인 도시환경 조성, 낭만이 있는 삶)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12개 정책 방향(①안정적 예술창작 환경 조성, ②창조인력 양성 및 활동기반 마련, ③생활문화예술 확대, ④문화공동체 복원, ⑤문화를 통한 도심 재생, ⑥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 ⑦생활밀착형 시민 문화공간 조성, ⑧지역문화 가치의 상징화 전략을 통한 지역의 대표성 창출, ⑨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 추구, ⑩풀뿌리 시민 생활문화 지원, ⑪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⑫시민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9〉 춘천시문화재단 정책방향



자료 : 춘천시문화재단(2013),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위와 같은 12개 정책방향에 따라 춘천시문화재단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을 재분류한 결과, 몇몇 영역(사람, 문화예술공간)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생산을 위한 저변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환경조성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곧 지역문화생태계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시문화재단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역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다음 표는 12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표 II-16]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정책방향	사업명
안정적 예술창작 환경 조성	예술단체 운영 지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업
	예술인협동조합 지원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창조인력 양성 및 활동기반 마련	공감소통
	지역문화인력 워크숍
	문화이모작 리더 양성 과정
	지식공유포럼
	청년문화학교
	문화예술 분야 창업지원
생활문화예술 확대	문화예술기획사 지원체계 도입
	시민 문화예술동아리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문화공동체 복원	시민 문화서포터즈 운영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문화를 통한 도심 재생	도시문화학교 개설
	열린무대
	시민문화공간 조성
	도시경관개선프로젝트
	예술의 거리 지정 운영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	예술골목 프로젝트
	공간운영
	창작공간 운영 및 레지던스 운영
	춘천문화예술공간사업 홍보 대행
생활밀착형 시민 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복합공간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디자인
지역문화 가치의 상징화 전략을 통한 지역의 대표성 창출	유휴공간 찾기 프로젝트
	축제/행사 지원
	춘천문화아카이브 구축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춘천 Festival-Hub 구축
	도시기록 프로젝트

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 추구	찾아가는 문화활동
	춘천 문화예술 라키비움 조성
	문화바우처 지역사업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문화정보 전달체계 정비
풀뿌리 시민 생활문화 지원	문화소비협동조합 프로젝트
	시민 창작공방 운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나는 오케스트라
	춘천문화체험사업
	전문문화예술교육가 양성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역문화교과서 프로젝트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지역문화포럼
	조직 내 정책부서 신설
	춘천시문화정책협의회 결성

자료 : 춘천시문화재단(2013),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연계 방안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3년에 계획 수립 후 현재 2년이 경과된 상황이다. 애초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으나, 춘천시문화재단은 2016년에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진흥계획과 재단의 역할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다시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 신청이 되었고, 춘천시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그와 연계한 재단의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된 정책과 사업들이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제시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전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시 이미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의 틀과 내용에 맞춰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과 해야 하는 사업들로 어느 정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발전방안은 기존의 계획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주시 사례 : 원주문화비전

(1) 계획 수립 배경

원주문화재단은 2012년에 원주시청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젊은 직원 5~6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설립 초기에 국고사업을 추진하면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며 원주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원주시는 2005~2015년 장기 프로젝트로 <원주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2013년에 재단과 지역대학,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원주문화비전 2020>을 수립할 시에는 비전에 문화재단의 역할을 주로 담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수렴하여 담아낼 것인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다. 지역에는 전문예술가들이 많지 않고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가가 나뉘어 있지 않기에 <원주문화비전 2020>에는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방향성 보다 생활문화 진흥과 지역의 문화향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용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재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체감하는 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문화비전 2020>을 만들면서 매달 문화재단 주관으로 1~2회의 포럼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예총, 문화원, 일반 시민들, 예술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원주에 필요한 색깔과 정책을 수립했다. 원주문화재단은 <원주문화비전 2020>을 수립하고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지역문화정책 개발과 추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계획 내용

원주문화재단은 <원주문화비전 2020>의 키워드를 ‘사람’, ‘삶’, ‘공간’으로 설정하고, ‘창조적인 생명문화시민’,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문화시민들의 활동공간 찾기’를 이루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각각 ①푸른 자연과 어우러지는 역동적이고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②문화로 행복한 원주시민, ③문화가 있는 원주시민의 삶, ④원주스타일의 메시지 발신, ⑤원주 문화역사자원의 발굴과 보존과 계승, ⑥문화를 통한 방문자산업 활성화, ⑦문화발전 통합체계 구축이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5개 아젠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표 II-17] 원주문화비전 2020 아젠다

아젠다	사업명
문화적인 도시환경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시민문화공간 조성

	미술관 조성(시립, 도립) 군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촌 건립 마을단위 소공연장 조성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확충 및 지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 예술단체(예종, 민예종) 운영지원 지역문화포럼-인력 양성 워크숍 공유포럼 청년 지역문화학교 문화예술분야 창업 지원
문화로 행복한 원주시민 (창조성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안정적 예술창작환경 조성 창조인력 양성 및 활동기반 제공 생활예술활동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복원 1004 공연 지원 상설공연 지원 문화예술축제 지원 지역문화아카이브(DB) 구축 어르신 문화학교 문화공동체 문화마을 만들기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문화의 집 활성화
문화가 있는 원주시민의 삶	문화복지의 실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창조성과 상상력 제고의 문화예술교육 생명인문학 도시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커뮤니티 맵핑 예술골목 만들기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디자인 유희공간 활성화 문화바우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원주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원주스타일의 창출	원주의 유산 선정 원주홍보관 건립 원주 일광장 조성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문화총서 발간 박경리 문학공원 활성화

	도시기록 프로젝트(원주의 기록)
	원주스토리텔링
	시민 창작공방 운영
	지역문화 교과서 만들기
	문화봉사단 구성
	지역학 원주학 육성
문화역사자원의 발굴과 보존, 계승	강원감영복원
	근대역사관 조성
	북원문화권 조성

자료 : 원주문화재단(2013), 원주문화비전 2020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연계 방안

원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 닿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부합하는 예술행정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 보내는 지침에 끼워 맞추는 식의 정책보다 현장에서 사업을 통해 예술가 및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전국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지역문화의 창조성을 표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만 지역문화를 진흥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고민이 시행계획 수립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나 광역시·도에서 제시하는 표본 몇 개를 뽑아서 장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를 효과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시행계획에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배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중요하며, 재단은 예술가와 시민의 매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원주문화재단의 조언은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

원주시는 2016년 문화도시 신청을 했고, '그림책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2016년부터는 연간 7억5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지역문화진흥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학인을 비롯한 예술가들과 그림책도시 사업단 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원주시는 이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이며 2016년도에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1)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1) 실행력 있는 사업 발굴

시행계획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실행력을 담보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명목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어 지역문화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사업, 향후 예산이 배정될 실질적 사업, 그럼에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싶은 사업, 해야 하는 사업들을 선별해 계획에 담아내도록 하되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읍·면·동 단위 사업 조사

기초 시·군 단위 시행계획에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의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영역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읍·면·동 단위의 관련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광역 시·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선정해 기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민·예술가(단체) 수요 조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상 지역주민과 예술가(단체)는 계획사업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 향유층과 창작층 간 상호협력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문화인력이 양성되고 주민들의 문화자치 역량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초단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는 주민들과 예술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동실태 및 수요 조사

를 실시하고 그에 기반 한 사업들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 문화재단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 문화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여러 문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워크숍, 포럼 등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의견과 고민을 모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광역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

강원도의 경우, 최근 도에서 각 시·군에 시행계획의 제출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체계는 도에서 문화부의 기본지침(3대 추진전략과 9대 사업)을 내려주고 그에 맞춰서 각 시·군이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사업을 제출하면 이를 모아서 강원도의 시행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탑 다운 방식의 계획 수립 방식보다는 최소한 시·군 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도가 지역문화의 큰 그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지점과 충청남도가 실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시·군이 제출하는 사업계획 문서를 모아서 짜깁기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군의 시행계획을 원활히 수립하도록 하는데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군 문화부서의 담당 계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계획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연구기관의 협조 아래 각 지역에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해주는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2) 시·군 시행계획의 기본내용

(1) 지역문화 여건 분석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은 무엇보다 지역의 실정과 문화적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역량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들이 주로 담겨야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행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매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과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양적 분석 외에 질적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조사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해당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자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보고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지역에서 각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이 가진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운다면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주민 문화향유실태 조사

지역문화 진흥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도를 제고하는 것이 본 계획의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평상시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어떠한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지향점에도 잘 부합된다. 문화민주주의적 정책은 기존에 ‘문화 향유자’라고 분류되던 계층들이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어 수립된 정책과 사업이 지역에서 실행될 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만족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3) 지역 예술가·단체 수요조사

지역의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가꾸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

체, 문화시설 담당자들의 의견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단순히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사업 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예술가들과 단체, 문화시설 관련자들은 지역문화 현장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와 참조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워크숍, 포럼, 간담회, 인터뷰, 자문회의, 현장 답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예술가들과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며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은 곧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사업화할 때 지역 문화예술가들과 단체, 문화기반시설이 사업의 운영 및 참여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사업

지역의 문화여건 조사와 주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지역 문화예술가·단체 수요조사를 모두 마친 후,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시·군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 시·군이 가야할 문화도시의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한다. 세부적인 추진사업 발굴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하며, 연구과정 중에 주민들과 전문가, 예술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상하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정책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진사업 발굴 시에는 타 계획과의 연관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광사업, 문화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이러한 계획들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추후 예산 확보나 계획의 실질적 추진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중점을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제3장.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주요 현황

1. 충남 시·군 지역문화 역량 현황

1) 전문인력 운영 및 양성 실태

(1) 문화예술단체

○ 공연예술단체

2012년 기준 충남의 공연단체는 총 40개이며, 이는 전국 2,108개 단체 중 1.9%에 불과하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양악이 15개 단체로 가장 많으며, 국악 12개, 연극 8개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I-1] 공연단체 현황

구분	단체수 (단위 : 개)	주요활동 장르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전국	2,108	573	336	678	419	102
전국평균	125	34	20	40	25	6
도평균	85	19	12	28	23	3
충남	40	8	3	15	12	2
전국대비비율	1.9%	1.4%	0.9%	2.2%	2.9%	2.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 공립예술단

충남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천안시에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에 충남교향악단, 부여군

에 충남국악단이 현재 활동 중이다.

[표 III-2]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구 분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설치근거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운영조례
창단일	1990. 11. 5	1990. 11. 15	1994. 12. 19
위치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단원구성	현원 : 50명 - 조례상 정원 : 60명 - 도예산 지원 : 50명 ※ 예술감독 1, 지휘자 1, 단원 45, 운영요원 3	현원 : 72명 - 조례상 정원 : 90명 - 도예산 지원 : 80명 ※ 지휘자 1, 단원 66, 운영요원 5	현원 : 41명 - 조례상 정원 : 45명 - 도예산 지원 : 35명 ※ 예술감독 1, 지도위원 1, 단원 37, 운영요원 2
특징	국악관현악(연주)	서양음악(연주)	국악(소리, 무용, 사물)

자료 :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 (사)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²⁾

한국예총 충청남도 연합회는 충남 예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와 향토 예술 창달로 충남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와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도연합회에는 8개 협회의 도지회와 14개의 예총지회가 소재하고 있다. 도지회 예술분야는 8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국악, 문인,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연예, 사진 관련하여 총 8개 협회가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의 회원 수는 2015년 기준 4,505명이며, 보령예총이 714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예총이 558명, 당진예총이 474명, 공주예총 3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활동인원 수는 국악(1,689명, 37.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술(677명, 15.0%), 연예(551명, 12.2%), 문학(543명, 12.1%), 음악(492명, 10.9%), 사진(285명, 6.3%), 연극(183명, 4.1%), 무용(85명, 1.9%) 순이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예술문화상, 계간 <예술충남지> 발행, 충남예술제, 출향·향토작가초대전, 문화활동사업 작품성 평가 등의 사업과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1962년 설립)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충남연합회이다.

[표 III-3] (사)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 현황

구분	회원수	단체 활동 분야
한국예총 충남도 연합회	4,505	
천안예총	558	국악,문인,미술,무용,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공주예총	364	국악,문인,미술,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보령예총	714	국악,문인,미술,무용,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아산예총	301	국악,문인,미술,무용,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서산예총	304	국악,문인,미술,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논산예총	212	국악,문인,미술,사진,음악,연예협회
계룡예총	238	국악,문인,미술,무용,사진,음악,연예협회
당진예총	474	국악,문인,미술,사진,음악협회
금산예총	136	국악,문인,미술,사진,음악협회
부여예총	279	국악,문인,미술,사진,음악,연예협회
서천예총	165	국악,문인,미술,사진,음악협회
홍성예총	225	국악,문인,미술,사진,연극,음악,연예협회
예산예총	301	국악,문인,미술,사진,연극,음악협회
태안예총	234	국악,문인,미술,음악,연예협회

자료 :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2015.2. 기준)

○ 문화예술 민간단체

충청남도 내에는 439개의 문화예술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별 로 살펴보면 천안시(79개), 보령시(51개), 공주시(45개), 서산시(43개)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술(97개), 국악(77개), 음악(51개), 문학(51개), 연극(21개)의 순이다.

[표 III-4] 충남 시군별 문화예술 민간단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국악	문학	미술	서예	무용	연극	음악	사진	기타
충남	439	77	51	97	4	17	21	51	17	104
천안시	79	8	9	18	4	3	5	18	3	11
공주시	45	6	5	12	-	5	4	2	-	11
보령시	51	2	7	21	-	-	2	5	4	10
아산시	34	8	2	7	-	2	3	2	1	9
서산시	43	14	5	5	-	1	2	2	-	14
논산시	37	10	3	8	-	4	1	5	3	3
계룡시	9	1	1	1	-	1	-	1	1	3
당진시	30	3	5	7	-	-	-	6	1	8
금산군	15	3	-	4	-	-	-	1	-	7
부여군	20	10	2	3	-	-	-	1	1	3
서천군	13	2	1	2	-	-	-	3	-	5
청양군	9	-	-	-	-	-	1	-	2	6
홍성군	22	4	4	4	-	-	1	3	1	5
예산군	23	5	4	1	-	1	2	2	-	8
태안군	9	1	3	4	-	-	-	-	-	1

자료 : 충청남도(2014), 충남문화예술 발전전략

○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2014년 기준 충남에는 총 7개의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다. 형태별로는 사단법인 2개, 재단법인 2개, 단체 3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예술단,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극단, 오페라단, 축제 추진위원회, 문화재단이 있다.

[표 III-5] 충청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내용	지정일
뜯쇠예술단	이권희	서산시	단체	2011. 11. 24
(사)백제제례국악관현악단	정찬응	부여군	법인	2011. 11. 24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아코디언오케스트라	전두환	천안시	법인	2011. 11. 24
극단 홍성무대	전인섭	홍성군	단체	2012. 8. 24
충청오페라단	양기철	당진시	단체	2012. 8. 24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이준원	부여군	법인	2013. 12. 30
(재)아산문화재단	복기왕	아산시	법인	2013. 12. 3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4.11.10)

○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문화예술과 관련된 충남의 협동조합으로 현재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 협동조합들은 전통문화, 공예, 광고 및 출판, 공연, 관광, 생태문화, 예술 재능기부 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충남지역 문화예술 매개 역량의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기반형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더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 III-6] 충남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현황

사군명	기관명	사업내용
천안	충남다원예술협동조합	◦ 예술, 재능 지식 기부
공주	우리놀이협동조합	◦ 전통문화 관련 사업
	충남도자기협동조합	◦ 도자기 생산 판매업
아산	소금꽃협동조합	◦ 광고, 출판업
	예술마당협동조합	◦ 문화예술산업
	상상더하기 문화예술협동조합	◦ 문화예술산업
	지역문화예술협동조합	◦ 공연콘텐츠 프로그램 제공사업
서산	놀이패뽀바람협동조합	◦ 전통 연희극(굿) 지속적 유지
논산	논산공예협동조합	◦ 공예품 제조판매
금산	협동조합 금산민속예술보존회	◦ 공연단체
서천	너나드리협동조합	◦ 생태문화, 공정여행
예산	협동조합 느린손	◦ 공예품 제조판매
태안	태안반도투어협동조합	◦ 관광산업
	청포대협동조합	◦ 관광산업 등

자료 : 충청남도(2014) 내부자료; 충청남도(2014), 충남문화예술 발전전략

○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문화산업과 관련된 충남의 (예비)사회적 기업 활동을 보면 현재 18개(인증전환 7개, 지정유지 11개)가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통문화공연과 체험, 공예체험,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예술 공연 등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예술 교육기관

○ 문화예술 관련 고등교육 기관 현황

[표 III-7] 충청남도 내 문화예술 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정원

구분	사군명	학교명	학과명	정원(명)
총계		20개 대학	83개 학과	3,085
종합대학 소계		15개 대학	71개 학과	2,405
종합대학	천안시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65), 시각디자인학부(30)	95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60), 애니메이션학과(51)	111
		나사렛대학교	피아노과(25), 관현악과(13), 실용음악과(20)	58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71),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50), 패션산업디자인과(30), 도예과(40), 공예과(40), 조소과(20), 무용과(40), 문예창작과(49), 작곡과(8), 피아노과(20), 관현악과(39), 성악과(20), 국악과(30), 생활음악과(35), 동양화과(40), 서양화과(35)	567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265), 연극학과(40), 방송영상(30), 피아노(30), 성악뮤지컬(25), 기독교실용음악(95)	485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40), 패션디자인학과(34), 텍스타일디자인학과(38), 실내디자인학과(40), 세라믹디자인학과(38), 사진영상미디어학과(56), 영화영상학과(47), 연극학과(46), 만화학과(29), 공연영상미술학과(47), 애니메이션학과(20), 디지털콘텐츠학과(20), 문화예술경영학과(25)	480
		공주시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33), 조형디자인학부(57), 만화애니메이션학부(39), 무용학과(25), 영상학과(35)
	당진시	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과(20)	20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30), 연극무용학과(25)	55
	아산시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21)	21
		서남대학교	디자인학과(3)	3
	홍성군	호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19), 시각디자인학과(29), 패션전공(15), 음악과(6), 애니메이션학과(25), 연극전공(15), 영상미디어전공(31)	140
		서산시	한서대학교	문예창작(7), 시각디자인(20), 영상애니메이션학과(25), 아동미술학과(9), 연극영화학과(21), 실용음악과(23)
	논산시	건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2)	2
	금산군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20), 패션디자인학과(10), 연극영화학과(19), 뮤지컬음악학과(7), 실용음악학과(18)	74
전문대학 소계		3개 대학	4개 학과	355
전문대학	천안시	천안연암대학	뷰티아트과(80)	80
		백석문화대학	실용음악학부(130), 디자인학부(105)	235
	당진시	신성대학	시각디자인과(40)	40
산업대학 소계		1개 대학	7개 학과	300
산업대학	홍성군	청운대학교	방송연기학과(60), 뮤지컬 연기학과(30), 실용음악과(50), 공연기획경영학과(50), 무대예술학과(30), 방송영상학과(50), 영화학과(30)	300
특수대학 소계		1개 대학	1개 학과	25
특수대학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25)	25

자료: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2) 생활문화 진흥 실태

(1)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생활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외 지방자치센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국정과제인 문화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유휴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며 2014년부터 서산 등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생활문화센터는 조성 지역의 입지, 규모, 기능 등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된다(전병태, 2014: 21).

[표 III-8] 생활문화센터 유형

구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거점센터(기반시설형)	준거점(공간지원형)	
위치	시·군·구 단위 (인구규모 및 면적에 따라 복수 설치)	광역 읍면동 단위 (시군구 당 적정수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기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시설 역할	생활권 내 생활문화 활동 거점 공간 역할	기초 생활문화 접점 공간
규모	약 1,000㎡ 이상 (소형 문예회관 수준)	약 500㎡~1,000㎡ 이내 (문화원, 문화의집 수준)	약 200㎡ 내외 (주민센터 수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4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12개 광역지자체에 31개 시설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충남은 온양문화원과 금산문화의집 2곳이 생활문화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보령시 웅천읍 주민자치센터와 부여문화원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표 III-9] 충남 생활문화센터 지정 현황

시군	기존/유휴	조성유형	시설명	지정년도
아산시	기존	준거점	온양문화원	2014
금산군	기존	준거점	금산문화의집	2014
보령시	기존	준거점	웅천읍 주민자치센터	2015
부여군	기존	준거점	부여문화원	2015

자료 : 조광호(2014), 56쪽; 안준철 기자(2015) 참고

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실태

(1) 충남 시·군 지역문화 관련 조례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 3년 이내에 조례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산시와 당진시로 각각 2012년에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문화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어서 논산시, 서산시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으로 모두 3곳이다.

[표 III-10]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현황

시·군명	조례명	수립년도(년)
아산시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2
서산시	문화예술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2014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2013
계룡시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
당진시	당진시 문화진흥조례	2012
금산군	금산문화예술진흥을위한조례	2015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2015

(2) 충남 시·군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계획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마련된 것이 3년 이내라는 점에서 조례와 연계된 지역문화진흥 제도나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례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지역문화재단

전국에는 총 60개의 문화재단이 있으며, 이 중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13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47개이다. 충남에는 광역도 단위의 충남문화재단(홍성군)과 기초 시·군 단위의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3개로, 총 4개의 문화재단이 있다.

[표 III-11] 충남 지역 문화재단 현황

구분	시설명	개관 년도	주요사업	인력 (명)	예산 (억원)	사업수 (개)
소계	4개					
광역 재단	충남 문화재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 도민 문화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공공문화시설의운영 및 관리 	16	142	지원사업(1) 교육사업(1)
기초 재단	천안 문화재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시·도 위탁사업 ◦ 지역축제 육성 및 행사 지원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19	61	시설사업(2) 기타사업(9)
	아산 문화재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정책 연구와 제안 ◦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지역축제 육성 및 행사 지원 ◦ 문화예술의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등 	7	38	교육사업(1) 기타사업(14)
	당진 문화재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교육·경영 지원 ◦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유산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기금 조성 ◦ 문예의 전당·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16	13.6	지원사업(4) 교육사업(3) 시설사업(2) 기타사업(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 충남 시·군 지역문화 격차 현황

1) 문화기반시설 조성 현황

(1) 충남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충남 시·군별 현황을 보면 천안이 24개소로 가장 많으며,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이 각각 13개소 순이다. 문화기반시설별 분포 특성을 보면 역사유산이 많은 공주시, 부여군 등에는 국공립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금산군, 예산군 등은 타 시·군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 충남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총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 의집	문화 재단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국	2,433	865	614	232	19	754	365	299	90	190	48	131	11	220	228	116	60
충남	150	55	36	19	-	44	27	14	3	8	1	7	-	17	15	7	4
(비중)	(6.1)	(6.4)	(5.9)	(8.2)	-	(5.8)	(7.4)	(4.7)	(3.3)	(4.2)	(2.1)	(5.3)	-	(7.7)	(6.6)	(6.0)	(6.7)
천안시	24	10	7	3	-	7	4	2	1	1	-	1	-	3	2	-	1
공주시	17	4	2	2	-	9	4	3	2	1	-	1	-	1	1	1	-
보령시	10	4	2	2	-	2	2	-	-	1	-	1	-	1	1	1	-
아산시	15	6	5	1	-	5	3	2	-	1	-	1	-	1	1	-	1
서산시	7	5	3	2	-	-	-	-	-	-	-	-	-	1	1	-	-
논산시	7	3	2	1	-	1	1	-	-	1	-	1	-	1	1	-	-
계룡시	4	2	2	-	-	-	-	-	-	-	-	-	-	1	-	1	-
당진시	12	4	3	1	-	3	2	1	-	1	-	1	-	1	1	1	1
금산군	13	5	4	1	-	4	3	1	-	-	-	-	-	1	1	2	-
부여군	7	1	-	1	-	4	4	-	-	-	-	-	-	1	1	-	-
서천군	5	2	1	1	-	-	-	-	-	-	-	-	-	1	1	1	-
청양군	3	1	-	1	-	-	-	-	-	-	-	-	-	1	1	-	-
홍성군	9	2	1	1	-	3	2	1	-	1	1	-	-	1	1	-	1*
예산군	10	3	2	1	-	4	1	3	-	1	-	1	-	1	1	-	-
태안군	7	3	2	1	-	2	1	1	-	-	-	-	-	1	1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는 각각 기초문화재단이, 홍성군은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 소재

지역별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 시설개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문화시설은 인구 십만 명 당 4.8개소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충남은 인구 십만 명 당 7.3개소로 전국 평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산군, 공주시, 예산군, 태안군의 경우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타 시·군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에는 도서관이 인구 십만 명 당 9.0개소로 전국 평균의 약 5배 이상 많으며 공주시의 경우 박물관이 인구 십만 명 당 7.7개소로 전국평균의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인구 십만 명 당 기반시설 수

(단위 : 개소)

구분	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전국	4.8	1.7	1.5	0.4	0.4	0.4	0.2
충남	7.3	2.7	2.1	0.4	0.8	0.7	0.3
천안시	4.1	1.7	1.2	0.2	0.5	0.3	-
공주시	14.6	3.4	7.7	0.9	0.9	0.9	0.9
보령시	9.5	3.8	1.9	1.0	1.0	1.0	1.0
아산시	5.2	2.1	1.7	0.3	0.3	0.3	-
서산시	4.2	3.0	-	-	0.6	0.6	-
논산시	5.6	2.4	0.8	0.8	0.8	0.8	-
계룡시	9.8	4.9	-	-	2.4	-	2.4
당진시	7.5	2.5	1.9	0.6	0.6	0.6	0.6
금산군	23.4	9.0	7.2	-	1.8	1.8	3.6
부여군	9.6	1.4	5.5	-	1.4	1.4	-
서천군	8.6	3.4	-	-	1.7	1.7	1.7
청양군	9.3	3.1	-	-	3.1	3.1	-
홍성군	10.0	2.2	3.3	1.1	1.1	1.1	-
예산군	11.7	3.5	4.7	1.2	1.2	1.2	-
태안군	11.2	4.8	3.2	-	1.6	1.6	-

주1: 인구 십만 명 당 기반시설 수 산출식 = 문화기반시설 수×100,000÷(해당연도)인구 수

주2: 2014 문화기반시설 총량의 기반시설수를 토대로 산출을 진행하여 2013년 기준 인구를 활용하여 인구 십만 명 당 기반시설 수를 산출함

(2) 도서관

충남의 공공도서관 수는 총 55개소(지자체 31개소, 교육청 19개소)로, 전국에 분포한 도서관 총 865개소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시설 수는 전국 평균을 유지하지만 도서자료, 이용자수, 직원 수, 사서직원 수, 운영예산은 모두 전국 평균과 도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4] 전국 대비 충남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 명, 천㎡, 석, 천원)

구분	시설수	도서자료	이용자 수	직원수	사서 직원수	총연면적	좌석 수	운영예산
전국	865	83,969,878	287,018,433	7,630	3,673	2,204	324,915	744,952,663
전국평균	51	4,939,405	16,883,437	449	216	130	19,113	43,820,745
도평균	66	6,286,128	17,619,845	501	224	167	23,171	56,355,143
충남	55	4,439,457	9,888,535	341	133	114	14,741	40,699,476
전국대비비율	6.4%	5.3%	3.4%	4.5%	3.6%	5.2%	4.5%	5.5%

주1: 직원 수는 공공도서관의 정규직 인력수를 나타냄

자료 : 1)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한편, 2013년 기준 충남의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연간 평균 개관일 수는 287일이며 주당 평균 개관시간은 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충남 시군별 도서관 수

(단위 : 개, 석)

구분	공공 도서관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공공(어린이도서관 포함)				총좌석수	장애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계	교육청	공립	사립			
전국	865	1.7	865	232	614	19	324,915	37	85
충남	55	2.7	55	19	36	-	14,741	1	3
천안시	10	1.7	10	3	7	-	5,441	1	-
공주시	4	3.4	4	2	2	-	602	-	-
보령시	4	3.8	4	2	2	-	852	-	-
아산시	6	2.1	6	1	5	-	939	-	1
서산시	5	3.0	5	2	3	-	1,434	-	1
논산시	3	2.4	3	1	2	-	894	-	-
계룡시	2	4.9	2	-	2	-	310	-	-
당진시	4	2.5	4	1	3	-	1,046	-	-
금산군	5	9.0	5	1	4	-	448	-	1
부여군	1	1.4	1	1	-	-	339	-	-
서천군	2	3.4	2	1	1	-	151	-	-
청양군	1	3.1	1	1	-	-	235	-	-
홍성군	2	2.2	2	1	1	-	765	-	-
예산군	3	3.5	3	1	2	-	685	-	-
태안군	3	4.8	3	1	2	-	600	-	-

자료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충청남도점자도서관(<http://lib.cnblind.or.kr>)

(3) 박물관

충남에는 총 44개의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국공립 박물관 27개소, 사립박물관 14개소, 대학 박물관 3개소가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공주시에 9개소(국립 1, 공립 3, 사립 3, 대학 2), 천안시에 7개소(국립 1, 공립 3, 사립 2, 대학 1) 등이 분포하고 있다.

충남도 내 44개 박물관의 총 연면적은 190,495㎡(1관당 평균 4328.6㎡), 소장 자료는 총 486,483점(1관 당 평균 11056.4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도 내에서 진행되는 기획특별전은 연간 48건이며 박물관 운영프로그램 개수는 연간 총 333건(1관 당 평균 7.6개) 수준이다. 기획 특별전의 경우 논산시 '백제군사 박물관'이 연간 6회,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이 연간 5회순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프로그램의 경우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이 연간 90개, 천안시 '독립기념관'이 연간 28개 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6] 충남 박물관 현황

(단위 : 개소, ㎡, 회, 개, 점)

구분	사군	시 설 명	개관 년도	건물 면적	기획 특별전	운영 프로그램	소장유물
총계		44개소	190,495㎡	48	333		486,483
국립 (5)	천안시	국립 우정박물관	1938	1,139	1	-	우정사업 관련 자료(331,789)
	공주시	국립 공주박물관	1940	12,103	4	90	고고, 미술품 등(60,359)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1993	13,924	4	22	고고, 미술품 등(45,358)
	아산시	국립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1	3,104	1	6	고문서, 무구 등(971)
	금산군	칠백의총관리소	1976	1,639	-	-	기록화, 유물 등(168)
공립 (22)	천안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2003	543	-	1	서적, 회화 등(98)
		천안박물관	2008	6,617	2	11	문헌자료, 미술자료 등(8,798)
		이동녕선생생가기념관	2010	349	0	1	영상자료, 문서류 등(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2006	2,050	1	8	석기, 토기, 골각기 등(10,200)
		송산리고분군모형관	2013	1,314	-	-	자료(211)
		충청남도역사박물관	2009	1,405	2	13	고서, 고문서, 목판 등(33,759)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1995	1,800	1	6	광물표본류 등(3,971)
		보령박물관	2013	8,636	1	1	향토, 석불 등(2,502)
	아산시	외암민속관	2004	602	-	-	민속품(1,303)
		영인산산림박물관	2012	3,686	2	14	목재, 화석, 표본 등(1,922)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2005	4,471	6	13	무기, 민속자료(597)

구분	사군	시 설 명	개관 년도	건물 면적	기획특 별전	운영 프로그램	소장유물
공립 (22)	당진시	기지사졸다리기박물관	2011	2,367	-	9	민속(493)
		합덕수리민속박물관	2005	869	-	9	동전, 석기, 도자기 등(683)
	금산군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2006	687	-	-	자기, 악기, 민속품 등(330)
		금산향토관	2009	2,046	-	-	민속품(800)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2006	3,149	5	6	금속, 옥석, 토도 등(1,315)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1987	473	-	-	기타(6)
		백제역사문화관	2006	8,796	1	1	토기류, 기와류, 철기류 등(228)
	홍성군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2004	232	-	-	민속류(1,020)
		홍주성역사관	2011	1,699	1	1	지류, 섬유류, 목재류 등(1,78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2001	1,412	-	3	금속류, 옥석류, 옹기류 등(51)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2002	1,610	-	2	선사, 역사(1,876)	
사립 (14)	천안시	독립기념관	1987	60,412	-	28	전적/문건류, 문화예술종교류 등(93,484)
		복권박물관	1997	185	-	-	주택복권 등(933)
	공주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2004	12,202	2	5	지질분야, 육상생물 등(278,389)
		공주민속극박물관	1996	700	1	2	민속품, 민속연극 등(1,200)
		동산박물관	2013	950	2	6	(3000)
	아산시	공세리 성지·성당박물관	2008	423	2	2	(1,418)
		(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	1978	6,600	2	12	금속, 보석, 토도 등(22,000)
	당진시	한국도량형박물관	2012	346	1	5	(980)
	금산군	태영민속박물관	2000	469	1	13	토기, 도기, 목죽초질 등(7,720)
	홍성군	한국식기박물관	2010	247	-	6	민속류(700)
	예산군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0	2,613	-	-	조각, 회화, 전적 등(3,041)
		한국고건축박물관	1998	2,791	-	-	고건축모형, 기구 등(163)
		한국문인인장박물관	2001	340	2	7	인장, 전각 등(1,245)
		한국고건축박물관	1998	2,791	-	-	(163)
태안군	안면도주라기박물관	2011	2,290	2	6	광물, 공룡화석 등(1,194)	
대학 (3)	천안시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09	8,720	1	4	고성경 및 교회사 등(1,700)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1974	611	-	6	자기 및 토기 등(7,900)
		공주대학교 부속박물관	1967	1,047	-	14	토도, 금속, 옥석 등(12,5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박물관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충남 박물관의 총 직원 수(521명)와 연 관람인원(6,901,891명

은 전국평균보다 많으며, 소장자료(486,483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전국 대비 충남 박물관 현황

(단위 : 개소, 점, 명)

구분	시설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전국	754	7,181	1,463	8,937,914	95,404,564
전국평균	44	422	86	525,760	5,612,033
도평균	61	520	88	572696	7,760,277
충남	44	521	86	486,483	6,901,891
전국대비비율	5.8%	7.3%	5.9%	5.4%	7.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4) 미술관

충남 도내 미술관은 총 8개소(공립1, 사립7)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립미술관의 경우 예산군을 제외한 6개시에서 사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도내 미술관의 총 면적은 15,185㎡(1관 당 평균 1898.1㎡) 수준이며, 총 소장 자료는 5,893점(1관 당 평균 736.6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8] 충남 미술관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군명	미술관명	소장품목	개관년도	면적(㎡)	연관람인원
공립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수목화 등 136점	2011	1,278	10,846
	천안시	리각미술관	회화, 판화, 조각 등 258점	1993	1,017	40,000
	공주시	임립미술관	서양화, 한국화 등 6,240점	1997	5,579	15,000
사립	아산시	당림미술관	서양화 등 1,010점	1997	846	9,000
	논산시	선화기독교미술관	한국화, 회화 등 135점	2001	2,099	-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미술품 602점	2003	3,300	709,500
	당진시	아미미술관	유화 등 190점	2010	820	12,000
	예산군	수덕사 선미술관	기도하는여인상 등 184점	2011	246	120,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미술관 운영측면에서 보면 충남 미술관의 연 관람인원(916,346명)은 도 평균(873,111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설수를 비롯해 총 직원 수(39명)와 소장자료(5,893점)는 도 평균보다 적어 미술관 관람 수요에 따른 운영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9] 전국 대비 충남 미술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점)

구분	시설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전국	190	1,796	390	277,096	14,627,422
전국평균	13	120	26	18,473	975,161
도평균	15	117	24	9,443	873,111
충남	8	39	16	5,893	916,346
전국대비비율	4.2%	2.2%	4.1%	2.1%	6.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5) 문예회관

2013년 기준 충청남도에는 총 17개의 문예회관이 있으며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다.³⁾

[표 III-20] 충남 문예회관 현황

구분	관리 기관	시 설 명	개관 년도	규 모			연간 예산액(백만원)	
				부지 (㎡)	연면적 (㎡)	객석수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전시	경상비
문예 회관	소 계	17개소		220,447	86,913	10,187(2,758)	3,433	7,123
	천안시	천안예술의전당	'12	33,755	33,755	1642(443)	-	-
		신부문화회관	'87	3,100	4,867	998(200)	-	127
		성환문화회관	'95	29,130	4,836	760(240)	-	139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90	9,840	3,825	649(185)	469	240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02	16,942	17,197	818(167)	460	331
	서산시	서산시문화회관	'90	11,994	3,626	601(80)	418	627

3) 아산시는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아산시의 '평생학습관'을 문예회관 현황에 포함시켰다.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85	10,091	2,615	577(180)	187	528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	'11	26,870	9,462	784(200)	226	1,180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05	15,982	7,600	1,011(300)	250	970
아산시	평생학습관	'92	10,074	6,949	509(509)	-	-
금산군	금산다락원	'04	32,269	19,055	727(250)	235	240
부여군	국악의전당	'94	4,392	1,625	(198)	-	50
서천군	문예의전당	'89	5,894	2,760	698(300)	200	60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06	23,352	5,615	735(190)	131	434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88	13,777	3,066	637(100)	220	937
예산군	예산군문예회관	'93	8,697	2,685	505	228	737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01	8,117	4,392	687(168)	409	52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전국대비 충남문예회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예회관 개소 수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전시일 수를 보면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어 예산, 인력 및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타 도와 평균을 비교하였을 시에도 모든 항목에서 도 평균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III-21]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문예회관수	직원수	전문직원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유료관객수	총이용자수
전국	220	4,008	1,522	31,291	29,945	5,891,647	20,877,680
전국평균	13	236	90	1,841	1,761	346,567	1,228,099
도평균	20	250	98	2,139	2,258	326,598	1,440,477
충남	17	125	47	2,079	1,322	246,749	1,121,575
전국대비비율	7.7%	3.1%	3.1%	6.6%	4.4%	4.2%	5.4%

주 1 : 공연(전시)일 수 = 자체기획공연(전시)일+대관공연(전시)일+공연(전시)준비일(철수일)

주 2 : 도 평균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의 평균값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은 45.0%로, 전국 평균 61.0%에는 미치지 못하나 도 평균 40.2%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충남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의 경우 21.1%로 나타나 도 평균 53.9%는 물론 전국평균 47.7%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연간 공연장 가동현황을 나타내는 공연장 가동일 수는 총 4,797일로 공연일 수 1,503일, 공연 준비일 수 853일, 기타 행사일 수 2,441일을 합한 값이다. 충남 공연장 가동률이 공연장 프로그램 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 공연장에서 공연(무대)외 여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22]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단위 : 개소)

구분	공연장수	공연장 가동률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전국	339	56.1%	41.2%
전국평균	21.1	61.0%	47.7%
도평균	29.8	40.2%	53.9%
충남	33	45.0%	21.1%
전국대비비율	9.7%	80.2%	51.2%

주1 :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 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기타행사일수/365-(시설물점검·설비일수+연간휴관일수)*100

주2 :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 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365-(시설물점검·설비일수+연간휴관일수)*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6) 공연장

충남 공연시설은 총 22개소로 시설 내에 총 37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충남의 인구 십만 명당 공연장 수는 1.8개로 나타난다.

[표 III-23] 충남 공연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공연시설명	개관 연도	시설특성	공연장명	좌석수 (석)	공연장 총계
공연시설 총계				22개	17,146	37
천안시	신부문화회관	1987	문예회관	소강당	200	10
				대강당	998	
	성환문화회관	1995	문예회관	소공연장	240	
				대공연장	760	
	충남학생교육문화원	1997	기타(공공)	충남학생회관 소강당	298	
				충남학생회관 대강당	1208	

	천안대학교예술극장	2005	민간(대학교 외)	천안대학교예술극장	156	
	천안시청 봉서홀	2005	기타(공공)	천안시청 봉서홀	1051	
	천안 익스트림 아트홀	2014	민간(대학교 외)	2관	130	
				1관	160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1990	문예회관	소공연장	119	2
				대공연장	649	
보령시	보령문화문예회관	2002	문예회관	소공연장	167	2
				대공연장	818	
서산시	서산시문화회관	1990	문예회관	소공연장	80	2
				대공연장	601	
논산시	논산문화예술회관	1985	문예회관	소공연장	180	2
				대공연장	587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011	문예회관	다목적홀	180	2
				대공연장	764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2005	문예회관	소공연장	300	2
				대공연장	1001	
아산시	아산시 평생학습관	1992	기타(공공)	아산시 평생학습관	532	3
	아산시청 시민홀	2009	기타(공공)	아산시청 시민홀	462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2009	기타(공공)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196	
금산군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2004	문예회관	소공연장	250	2
				대공연장	727	
부여군	부여국악의전당	2004	문예회관	부여국악의전당	198	1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1989	문예회관	소공연장	300	2
				대공연장	834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2006	문예회관	소공연장	190	2
				대공연장	735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1988	문예회관	소강당	100	2
				대강당	615	
예산군	예산문예회관	1993	문예회관	예산문예회관	505	1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	2001	문예회관	소강당	168	2
				대공연장	687	

주1 : 1개의 국립립 공연시설에 2개 이상의 공연장이 있을 시 공연시설을 기준으로 총계를 집계함

자료 :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http://www.kopis.or.kr>)

충남의 공연장 총 객석 규모는 17,146석으로 공연장 당 평균 463.4석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 공공 공연장은 총 28개소, 기타(공공) 공연장은 5개소, 민간(대학교 외) 공연장은 2개소이다. 규모별⁴⁾로 살펴보면 300석 미만의 소극장이 45.9%(17개소), 300~1000석 미만의 중극장이 15.9%(17개소), 1000석 이상의 대극장이 8.1%(3개소)로 조사되었다.

4) 공연장규모(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구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실태조사 분류에 따름

(7) 지방문화원

충남에는 총 15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천안시에 2개의 문화원(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서북구문화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계룡시에만 현재 문화원이 없는 상태이다.

[표 III-24] 충남 문화원 현황

사군	시 설 명	설립 년도	회원수 (명)	인력 (명)	예산 (천원)	시설 (㎡)	연간참여자수 (명)
소 계	15개소		18,410	47	7,874,820	12,530	341,264
천안시	천안동남구문화원	1958	171	1	202,250	488	1,304
	천안서북구문화원	1963	1,170	4	116,448	276	1,580
공주시	공주문화원	1954	288	3	618,000	2,159	4,705
보령시	보령문화원	1956	648	2	161,600	499	40,740
아산시	온양문화원	1957	673	3	351,925	696	1,200
서산시	서산문화원	1957	540	3	1,257,328	1,893	231,761
논산시	논산문화원	1957	554	3	1,029,560	78	4,574
당진시	당진문화원	1995	720	4	401,245	799	8,700
금산군	금산문화원	1967	988	3	440,203	226	23,036
부여군	부여문화원	1954	133	2	931,100	125	870
서천군	서천문화원	1965	194	2	19,791	611	3,070
청양군	청양문화원	1965	382	4	370,215	571	1,512
홍성군	홍성문화원	1954	166	5	626,010	1,996	620
예산군	예산문화원	1955	11,198	4	514,241	1,137	3,966
태안군	태안문화원	1990	585	4	834,904	976	13,6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충남발전연구원(2015),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8) 문화의 집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문화활동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상호 교류와 소통에 기반 한 예술창작 및 문화체험,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문화창조'적 활동을 직접 영위할 수 있는 기초 단위 문화공간이다.

2013년도 기준, 전국에는 총 116개의 문화의집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 시·도에 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다. 충남에는 총 7개의 문화의집이 있으며, 지역별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에 각 1개소가, 금산군에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운영 주체별로는 직영이 4개소, 위탁운영이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5] 충남 문화의집 현황

시군	문화의집	개관일	운영형태 및 운영 주체 (운영기관)		연간 이용자수 (명)	인 력 (명)	문화의집 총면적 (㎡)	예산 총액 (천원)
공주시	유구 문화의집	2006.1.9	직영	유구읍사무소	4,053	1	932.2	17,000
보령시	주산 문화의집	1999.5.18	직영	주산면사무소	12,000	2	101.0	75,730
계룡시	계룡 문화의집	2005.4.1	직영	신도안면사무소	16,637	3	130.0	69,936
당진시	당진 문화의집	1999.5.19	위탁	당진문화원	25,000	1	710.8	30,000
금산군	추부 문화의집	2003.5.1	위탁	추부문화예술진흥회	42,660	3	274.3	189,651
	금산 문화의집	2000.5.20	위탁	금산문화의집	50,000	3	330.8	140,000
서천군	서천 문화의집	2005.10.1	직영	서천군청	2,000	2	89.2	25,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회원 수의 경우 예산문화원(11,198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천안서북구문화원(1,170명), 금산문화원(988명) 순이다.

[표 III-26] 전국 대비 충남 문화의집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문화의집 수	운영인력 수	연간이용자 수	총 프로그램 수	동아리 수	예산 총액
전국	116	304	3,134,541	1,614	445	8,623,322
전국평균	6.8	2.62	27,022	13.91	3.84	74,339
도평균	10.7	2.62	24,950	13.86	4.09	70,841
충남	7	15	152,350	99	37	547,317
전국대비비율	6.0%	4.9%	2.1%	1.6%	1.2%	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 문화접근성 실태

(1) 문화환경 취약지역 대상 문화서비스 현황

○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시 단위 지역에는 계룡시를 제외하고 모두 영화관이 있으나, 군 단위 지역에는 부여군과 홍성군을 제외하고는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⁵⁾ 공모를 통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영화관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공모사업에 서천군과 예산군이 선정되어 작은영화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천군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작은영화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군은 2015년 12월부터 작은영화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내 극장이 없는 지역은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4개 지역으로 줄었으며, 금산군과 태안군의 경우 2016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 2015년 10월에 확정되어 2016년부터 설계 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작은영화관 사업은 중앙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지원을 받아 설립될 수 있으므로,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III-27] 작은영화관 사업 개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개소 당 사업비(백만 원)	사업내용
극장 부재지역	1년간	1,000 (지특 50%, 도비 15%, 시·군비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 리모델링 등 ◦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 충남 극장 없는 지역(4개소) :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5) 문체부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이란 수익성 문제로 상업극장이 진출하지 못하는 문화사각지대인 지자체 주민들에게 영상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90개소의 작은 영화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도내 최초 작은영화관인 서천군 작은영화관은 장항미디어센터 내에 총사업비 20억원(국비 7억 원, 도비 3억1000만 원, 군비 9억9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803㎡에 준공이 완료(2015.10)되어 개관식(2015.12)을 앞두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에 2개 상영관(1관 59석, 2관 95석)과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영화관이 없어 군산이나, 익산, 심지어 전주 등지에서 영화를 관람해야 했던 서천군민들은 불편 해소와 함께 개봉영화를 상업영화의 절반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게 됐다. 작은영화관 개관을 계기로 서천군과 군산시와의 지역문화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III-28] 충남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

시·군명	시설명	규모	건립방식	주요시설	운영기관	사업예산(백만원)	
						국비	도비
총계	-	-	-	-	-	국비	2,200
						도비	760
						군비	2,040
						총사업비	5,000
서천군	서천군 작은영화관 (2015.10. 준공)	지상 2층 803.34㎡ (243평형)	증축 및 일부 리모델링	1관(59석/93.73㎡) 2관(95석/162.41㎡) 휴게공간(84.65㎡)	위탁 (사)관악 공동체 라디오	국비	700
						도비	310
						군비	990
						총사업비	2,000
예산군	문화예술 창작센터 (2015.12. 착공)	500㎡	신규 건립	2개관 총 99석 (상영관, 휴게소 등)	미정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총사업비	1,000
금산군	인삼골 작은영화관 (2016.2. 설계 발주)	지상 1층 274㎡ (83평형)	리모델링	1관(40석/93.73㎡) 2관(38석/162.41㎡) 휴게공간(84㎡)	금산군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총사업비	1,000
태안군	태안시네마 (2016.2. 설계 발주)	210㎡	신규 건립	2개관 총 100석	태안군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총사업비	1,000

자료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2015.10), 지역특화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산업기반 조성 분야 자료

(2)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현황

○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는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공연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416백만원이며, 이 중 도비가 216백만원(16백만원은 사업 작품성 평가비), 시군비가 200백만원이다. 분야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9]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현황

(단위 : 건, 천원)

분 야	신청 내용		선정 내용	
	건수	신청액	건수	지원액
계	86	765,022	64	400,000
연 극	11	104,400	11	80,000
음 악	20	169,160	12	84,000
무 용	8	101,700	6	58,400
국 악	23	183,062	19	88,000
다원예술	24	206,700	16	89,60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2)

○ 농촌 등 문화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충청남도 내 5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에서는 도서 농어촌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사업비는 6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이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는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시 단위 지역에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군 단위 농촌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0] 시·군별 문화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시·군명	지 원 액		
	계	도비	시군비
계	60,000	18,000	42,000
천안시	12,000	3,600	8,400
공주시	12,000	3,600	8,400
논산시	12,000	3,600	8,400
계룡시	12,000	3,600	8,400
태안군	12,000	3,600	8,40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2)

3) 문화재원 현황

(1) 충남 문화예술 예산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액은 56,580억 원(일반회계 46,643억 원, 특별회계 9,937억 원)이며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997억 원(일반회계 1,984억 원, 특별회계 1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53%, 일반회계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은 총 1,01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8% 수준이며, 충남의 시·도별 문화예술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31] 충남 시·도 문화예술 예산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본예산총액	문화예술 및 문화재 예산 규모	본예산 대비 비율	인구수	인구 천 명 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
충남	4,870,991	87,234	1.79	2,064,229	42.3
천안시	1,280,000	36,720	2.87	591,089	62.1
공주시	551,100	27,870	5.06	116,369	239.5
보령시	579,481	8,533	1.47	104,938	81.3
아산시	881,200	10,483	1.19	287,073	36.5
서산시	572,969	9,526	1.66	165,837	57.4
논산시	574,095	12,601	2.19	125,844	100.1
계룡시	136,421	8,981	6.58	40,957	219.3
당진시	648,345	14,947	2.31	159,615	93.6
금산군	337,130	3,510	1.04	55,441	63.3
부여군	408,500	23,268	5.70	72,547	320.7
서천군	351,495	3,302	0.94	58,441	56.5
청양군	265,654	2,913	1.10	32,155	90.6
홍성군	429,907	10,086	2.35	89,704	112.4
예산군	435,799	9,432	2.16	85,205	110.7
태안군	390,007	5,854	1.50	62,416	93.8

주1 : 인구 천 명 당 문화예술 규모(백만 원) = 문화예술 예산 총액 × 1000명 ÷ 인구수

자료 : 각 시군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서(2015), 통계청 (2015.5 인구 기준)

3. 충남 시·군 지역문화 자원 현황

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

(1) 유형문화재

충남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으로 대표되는 선사문화, 고도(古都)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 및 충청 유교문화의 본고장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충남의 문화재는

2015년 기준 997건(국가지정문화재 218점, 도지정문화재 729점, 등록문화재 50점)으로 보유량 면에서 전국 6위이다.

[표 III-32] 시·군별 지정문화재

구 분	총계	지정 문화재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록 문화 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중요 무형	천연 기념	중요 민속	소계	유형 문화 재	기 념 물	무형 문화 재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합계	1000	957	228	27	104	51	8	14	24	729	183	163	46	27	310	43
천안시	84	62	14	1	10	1	0	2	0	48	8	13	0	0	27	22
공주시	153	149	47	16	21	9	1	0	0	102	43	20	6	2	31	4
보령시	50	49	8	1	3	3	0	1	0	41	11	7	2	2	19	1
아산시	66	66	14	1	4	3	0	0	6	52	9	8	3	7	25	0
서산시	66	64	17	1	11	3	0	0	2	47	13	9	3	3	19	2
논산시	103	95	15	0	9	2	0	1	3	80	25	15	3	3	34	8
계룡시	8	8	0	0	0	0	0	0	0	8	1	1	1	1	4	0
당진시	33	33	8	0	4	0	2	1	1	25	3	13	1	1	7	0
금산군	41	41	5	0	1	1	1	2	0	36	8	5	3	0	20	0
부여군	152	149	49	3	18	22	1	1	4	100	25	27	5	0	43	3
서천군	39	39	9	0	3	2	2	1	1	30	1	8	6	0	15	0
청양군	36	36	10	2	7	0	0	0	1	26	6	4	3	4	9	0
홍성군	56	54	9	0	4	2	0	0	3	45	7	10	6	3	19	2
예산군	87	86	17	1	9	2	1	1	3	69	18	17	2	0	32	1
태안군	26	26	6	1	0	1	0	4	0	20	5	6	2	1	6	0

자료 : 충청남도(2014년), 충남통계연보

충남지역 시·군별 문화재 분포현황을 보면 공주, 부여, 논산에 각 100건 이상의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산, 천안, 아산, 서산, 홍성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 공주, 예산, 서산, 논산 순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공주, 부여, 논산, 예산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재 분포는 시대별로 특징을 보이는데 공주, 부여, 논산에 백제문화권 관련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예산, 서산, 홍성은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 무형문화재

충남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17명,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82명 등 총 99명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는 판소리 적벽가(공주), 은산 별신제(부여), 한산 모시짜기(서천), 기지시 줄다리기와 먼천 두견주(당진), 바디장(서천), 목조각장

(금산)이 있으며,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는 단천장(천안), 탄천 장승제(공주), 남포벼루제작(보령), 옹기장(아산), 박첨지놀이(서산), 연산백중놀이(논산), 금산 물페기농요(금산), 산유화가(부여), 한산세모시짜기(서천), 청양정산동화제(청양), 결성농요(홍성), 소목장(예산), 황도봉기풍어제(태안), 당진 안섬당제(당진) 등이 있다.

한편 충남에서는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의 적극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교육 이수자, 전수교육 조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전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33] 충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가지정			도지정			단체 (국/도)
	계	보유자	조교	계	보유자	조교	계	보유자	조교	
계	99	53	46	17	8	9	82	45	37	3/11
천안시	0	0	-	-	-	-	0	0	-	-
공주시	7	3	4	1	-	1	6	3	3	/2
보령시	1	1	-	-	-	-	1	1	-	-
아산시	3	3	-	-	-	-	3	3	-	-
서산시	6	1	5	-	-	-	6	1	5	-
논산시	8	3	5	-	-	-	8	3	5	/1
계룡시	1	1	-	-	-	-	1	1	-	-
당진시	5	3	2	4	2	2	1	1	-	2/1
금산군	9	5	4	1	1	-	8	4	4	/2
부여군	18	8	10	6	2	4	12	6	6	1/2
서천군	16	10	6	4	2	2	12	8	4	/1
청양군	5	3	2	-	-	-	5	3	2	/1
홍성군	12	7	5	-	-	-	12	7	5	/1
예산군	4	3	1	1	1	-	3	2	1	-
태안군	4	2	2	-	-	-	4	2	2	-

자료 :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3)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1월 제 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은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 각국의 유산을 말하며,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1995년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비롯해 총 11개의 유네

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 2015년에 개최된 제 39차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충남의 백제역사유적 6건(공주시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군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이 최종 등재된 바 있다.

2)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실태

(1) 근·현대 산업유산 및 유희공간

근현대 산업유산과 유희공간은 현재 문화자원으로 적극적으로 보존되거나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미래 문화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산업공간은 '산업활동에 공헌해온 산업 관련 결과물, 기술, 인프라(운하, 철도, 항만 등) 등'을 일컫으며, 유희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비어있는 곳'을 지칭한다(강동진·이석환·최동식, 2003: 10; 김연진, 2009: 186).

[표 III-34] 산업유산 및 유희공간 정의 및 예시

구분	정의 및 예시
산업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활동에 공헌해온 산업 관련 결과물, 기술, 인프라(운하, 철도, 항만 등) ◦ 사례: 폐선부지, 폐발전소, 폐공장, 폐창고, 폐광, 폐철도, 조선소, 방앗간, 방파제, 폐철도 등
유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비어 있는 곳 ◦ 군사시설, 행정시설, 교육시설, 기타 시설 이적지, 자투리 공간, 도심공동화 지역

시·군에서 활용계획이 있거나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근·현대 산업유산과 유희공간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I-35] 충남 시·군별 산업유산 현황

구분	소속	개소수(개)	소재지(읍·면)	시설 용도(또는 시설 명칭)
산업유산	천안시	1	신안동, 성거읍, 입장면	안성선폐철도
	공주시	1	공주시 금성동	금강교
	아산시	2	아산시 도고면	아산 코미디홀, 레일파크
	서산시	1	서산시 지곡면 중앙	창작 예술촌 사용(폐교)
	논산시	6	강경읍	근대건축물(은행, 의원, 관사, 갑문등)
	당진시	1	당진시 신평면	신평양조장(사유지)
		1	당진시 면천면	면천양조장(사유지)
	금산군	1	금산군 추부면	폐 (구)추부터널
서천군	1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장항제련소 굴뚝	

	태안군	1	소원면	방파제
--	-----	---	-----	-----

충남의 산업유산으로는 천안시 신안동과 성거읍, 입장면에 걸쳐 있는 안성선 폐철교, 공주시 금강교, 금산군의 추부터널, 태안군의 방파제 등 근대 기반시설이 있으며, 그 외에 논산시 강경의 근대 건축물, 당진시 양조장, 서천군의 제련소 굴뚝 등 9개 시·군이 활용도가 높은 산업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5개로 공주시의 구 입석초등학교 폐교 부지, 서산시의 전시시설, 당진시의 면천우체국, 청양군의 구 칠갑분교, 태안읍의 군사 시설이 대표적이다.

[표 III-36] 충남 시·군별 유휴공간 현황

구분	소속	개수	소재지(읍·면)	시설 용도(또는 시설 명칭)
유휴 공간	공주시	1	유구읍 입석리	(구)입석초등학교(폐교부지)
	서산시	1	서산시 부석면 창리	전시시설로 사용하던 곳(교육시설)
	당진시	1	당진시 면천면	면천우체국(사유지)
	청양군	1	청양 대치면	구칠갑분교(장곡지구테마학습장)
	태안군	1	태안읍	군사시설

(2) 마을별 전통놀이 등 생활문화자원

시·군 마을별로 민속유희(놀이)·민속경기·민속무용·민속음악·민속극·인형극 등이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자연환경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상 주요한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문화 발굴 창조’ 부문의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자원 복원 및 확산’ 계획과 연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에 ‘절기별 세시풍속을 지키는 마을 선정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주요 세시풍속 전래마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마을별 전통축제 및 공동체 놀이 문화의 발굴·복원·전승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래 표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시군지를 기반으로 발췌한 민속놀이 목록이다. 이러한 민속놀이자원을 마을축제와 연계해 활용한다면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진작시키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주민과 관광객 간의 교류와 공감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7]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민속놀이

시·군	기예전승 내용
천안시	◦ 민속놀이, 아우내 단오 축제, 공치기, 남원골 춘향이, 다리 세기, 두레 싸움, 들독 들기, 오룡쟁주 놀이, 용정리 돈마루 노적거리, 성성동 사라리 줄다리기, 쌍용동 줄다리기, 아우내 장터 줄다리기, 직산읍 줄다리기, 차암동 수레터 줄다리기, 행정리 구정 줄다리기
공주시	◦ 고누, 공기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다리세기, 땅재먹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윷놀이(베들 윷놀이, 보리풍년 윷놀이), 연날리기, 자치기, 쥐불놀이, 지계놀이, 탄천 소라실 장승제, 두레 싸움, 두레풍장 겨루기, 장치기, 삼십육계, 호미씻기놀이, 암소강다리기, 꼬대각시, 열두대징이 풍장놀이, 윷뜯싸름, 윷두기, 장치기, 팔매 싸움
보령시	◦ 장고도 등바루 놀이, 진대서낭제, 용왕제, 등불씨기 등
아산시	◦ 씨름, 망울돌리기, 줄다리기, 윷놀이, 상륙(上陸), 고니, 땅 빼앗기 놀이, 전장리 원 땅빼앗기, 팽이 치기, 연 날리기, 닭잡기 놀이, 숨바꼭질, 공치기, 달궁달궁, 풀무, 짹짹, 글방놀이, 가정오락(娛樂), 그네뛰기, 널뛰기, 농악놀이, 노적(露積)거리, 풍년제
서산시	◦ 박첨지놀이, 웅소성리 호상놀이, 지점놀이(집터다지기), 인지무등농악, 벗가리대놀이, 농악, 벗가리 놀이, 장승제, 해신제, 영신제, 굴부르기제 등
논산시	◦ 낙화놀이, 술매키, 연날리기, 연산백중놀이, 윷놀이, 종경도(從卿圖), 줄다리기, 쥐불놀이, 지와바리, 노성두레풍장, 황산벌풍장놀이
계룡시	◦ 왕대리 백중놀이, 음력 정월에 행해지는 광석리 산신제, 옛치기, 윷놀이, 투호
당진시	◦ 기지시 줄다리기, 달집 태우기, 장승세우기, 솟대세우기, 벗가리대세우기, 줄다리기, 연날리기, 널뛰기, 씨름, 각시놀이, 풍년놀이, 뱃놀이
금산군	◦ 주장방애(방아), 들돌, 고리먹기, 땅 공치기, 고누, 종경도, 비석치기, 송계놀이(칠석놀이), 골패(骨牌), 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들독들기, 망우리불놀이, 대방치기, 그네뛰기, 공치기, 햇불싸움, 쥐불놀이, 궁쥐팔쥐, 왕대포, 한발두발, 색깔찾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줄, 얼음불놀이, 앉은뱅이, 왕짱구, 땅따먹기, 도둑놈잡기, 사부놀이, 강통차기, 구슬치기, 빠치치기, 딱지치기, 못치기, 잡기장난, 탈출놀이, 김일성놀이, 일등따라하기, 흙뺨기, 꺾쟁이, 받침놀이, 글자찾기, 나뭇잎따기, 동시카바이, 나무치기, 달팽이집, 가로막기, 깔치기(깔따먹기), 잔디사움과 풀겨루기, 무덤놀이, 돈치기, 수건돌리기, 봉사잡기, 방아깨비놀이, 풍덩이돌리기, 여우놀이, 핀치기, 닭잡기, 기차놀이, 꼬리잡기, 돌팔매질, 거머리, 두꺼비집 짓기, 호드기불기, 소꿉장난, 썰매타기, 옛치기, 다리헤기, 가락지감추기, 전기(電氣), 돈까스, 백따귀, 똥수간, 따바리분기, 싸싸싸, 공동묘지, 삼사, 구름사다리, 쥐와 고양이, 백받침, 딸기받침, ‘큰자’ 놀이, 만대치기, 포로따기, 나무던지기, 자치기와 발자치기, 가이생, 오징어, 오재미, 광놀이, 못박기, 나이먹기, 말뚝박기, 전쟁놀이, 진돌이, 나무긋기, 칼싸움, 일곱발뛰기, 육·해·공군, 귀신놀이, 얼음놀이, 기마전, 자가이생, 숨기장난, 보물찾기, 개백따귀, 8자놀이, 신발뺨기, 군기놀이, 해바라기, 줄넘기, 빠사공, 궁집기, 꼬리따기, 가마놀이, 닭쌈, 사방치기, 보물던지기, 오징어사방, 돼지불알, 네발뛰기, 지계형상, 고리먹기, 갈퀴치기, 지계걸음, 곰재주부리기, 돌림놀
부여군	◦ 신발 뒤집어 놓기·신발 감추기, 잠 안자기, 쥐불놀이·쥐불싸움, 연 날리기, 꼬대각시 놀리기, 나무(남원)께 춘향이 놀리기, 수건돌리기, 용알뜨기, 줄다리기, 윷놀이, 동화제(洞火祭), 꽃반 올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풍장놀이·두레잔치, 강강수월래, 추석 난장 씨름, 풀각시 만들기, 풀피리·호뜨기(호드기) 불기
서천군	◦ 저산팔읍 길쌈놀이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날리기, 줄다리기, 쥐불놀이, 널뛰기, 돌들기, 윷놀이, 고누(고늬), 자치기, 발자치기, 구슬치기(소고치기), 딱지치기, 뽕지치기, 돈치기, 못치기, 상수리치기·밤치기, 기차놀이, 썰매타기, 솜바꼭질, 리울(르)다까래, 박케스놀이, 시계불알 놀이, 바퀴팔공(목자치기), 배지팔공, 나무공 놀이, 나무꾼 하키, 공기놀이, 오재미 놀이, 기마전, 말타기, 활쏘기, 총놀이, 물총놀이, 땅뽕기, 오징어 가이생, 십자놀이, 팔자놀이, 자전거 림·물통 테 돌리기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제기차기, 호띠기(피리) 불기, 다리헤기, 자치기, 팽이치기, 구슬치기, 돈치기, 말타기, 두꺼비집 만들기, 고무줄, 수건돌리기, 깡통차기, 손뼉치기
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낫치기, 갈퀴치기, 호박고누, 대작고누, 돈치기(돌치기), 땅따먹기, 자치기, 새총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리온, 오징어놀이, 말뚝박기, 집뽕기 놀이, 고막껍데기 놀이, 진치기 놀이, 쥐불놀이, 벧가리 놀이, 옛치기, 제기차기, 연 날리기, 공놀이, 팽이치기, 고무줄놀이, 소연극, 애기 날기, 밖·안·밖·가스, 발짝 뛰기, 투호, 비석치기, 공기놀이, 큰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씨름, 솜바꼭질, 윷놀이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윷놀이, 널뛰기, 갈쟁이, 연날라기, 쥐불놀이와 햇불싸움, 풍장(농악), 벧가리놀이, 지신뺨기, 꼬대각시, 그네, 씨름, 복놀이, 칠석놀이, 풍물치기, 윷놀이, 썰매타기,

자료 : 충청남도 15개 시·군 시군지

3) 지역문화브랜드(문화도시·문화지구·문화마을) 현황

(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문화마을)

충청남도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문화도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장소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화마을’ 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동체 생활권 마을을 대상으로 3년간 문화공동체 형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공간 활용 및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표 III-38]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개요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개소 당 사업비(백만 원)	사업내용
문화도시	문화생활권 공유 도시권역	5년간	3,750 (지특 40%, 도비 18%, 시군비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장소 가치재창조 사업
문화마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동체 생활권 마을	3년간	600 (지특 40%, 도비 18%, 시군비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공동체 형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공간 활용 및 조성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3개 도시와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문화도시로는 남원, 문화마을로는 공주 상신마을과 부여 규암마을이 선정되어 조성 중이다. 2015년에는 대상지가 확대되어 모두 17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문화도시로는 천안, 대구, 군산, 여수, 구미, 서귀포가 대상지가 되었고, 문화마을로는 당진, 홍성, 예산, 대구, 부산, 성남, 양평, 여수, 양산, 제주, 세종이 추가로 선정된 바 있다.

[표 III-39] 전국 문화도시·문화마을 현황

연도	구분	개소수(개)	대상지
2014	문화도시	1	남원
	문화마을	2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
2015	문화도시	6	천안, 대구, 군산, 여수, 구미, 서귀포
	문화마을	11	당진, 홍성, 예산, 대구, 부산, 성남, 양평, 여수, 양산, 제주, 세종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충청남도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총 7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1,100백만 원(국비 4,440백만 원, 도비 1,998백만 원, 시·군비 4,662백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시가 4개(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군이 3개(부여군, 홍성군, 예산군)로 시 단위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문화마을형 사업으로 공주시 상신마을과 부여군 규암마을 2개소가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문화도시형으로 천안시가, 문화마을형으로는 당진시 '기지사줄다리기마을', 홍성군 '고암예술마을', 예산군 '의좋은형제마을'이 선정되어 모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6년 공모사업에는 문화도시형으로 서산시의 '해뜨는서산' 1개소가 선정되었다.

[표 III-40] 충청남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현황

연도	구분	시·군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 원)	
총계 (7개소)	문화마을 (5개소)	5개 시·군	공주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2014~2020년 (7년간)	국비	4,440
	문화도시 (2개소)	2개 시	천안시, 서산시		도비	1,998
2014	문화마을 (2개소)	공주시	상신마을	2014~2016 (3년간)	시비	4,662
		부여군	규암마을		2014~2016 (3년간)	총사업비
	문화마을 (3개소)	공주시	상신마을	2014~2016 (3년간)		국비
					도비	54
		부여군	규암마을	2014~2016 (3년간)	시비	126
					총사업비	300
2015	문화도시 (1개소)	천안시	천안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2015~2019 (5년간)	국비	300
	문화마을 (3개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마을		2015~2017 (3년간)	도비
				군비		315
		홍성군	고암예술마을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750
					국비	1,500
	문화마을 (3개소)	예산군	의좋은 형제마을	2015~2017 (3년간)	도비	675
시비					1,575	
서산시		해뜨는 서산	2016~2020 (5년간)	총사업비	3,750	
				국비	240	
문화마을 (3개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마을	2015~2017 (3년간)	도비	108	
				시비	252	
	홍성군	고암예술마을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600	
				국비	540	
문화마을 (3개소)	예산군	의좋은 형제마을	2015~2017 (3년간)	도비	243	
				군비	567	
	서산시	해뜨는 서산	2016~2020 (5년간)	총사업비	1,350	
				국비	240	
2016	문화도시 (1개소)	서산시	해뜨는 서산	2016~2020 (5년간)	도비	108
					시비	252
	문화마을 (3개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마을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600
					국비	240
문화마을 (3개소)	홍성군	고암예술마을	2015~2017 (3년간)	도비	108	
				군비	252	
	예산군	의좋은 형제마을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600	
				국비	240	
2016	문화도시 (1개소)	서산시	해뜨는 서산	2016~2020 (5년간)	도비	675
					시비	1,575
	문화마을 (3개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마을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3,750
					국비	1,50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시민공모사업과 문화창업 지원, 시민 문화기획자 발굴, 공연 레지던시, 청년문화 인턴십 등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형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이 많은데 반해, 문화마을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마을회관·빈집, 창고 등 공간 리모델링 사업,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 마을 홍보사업 등 마을 단위의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1] 충청남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내용

구분	시·군명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도시	천안시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커뮤니티 운영, 창의인재 교육, 시민공모사업 ◦ 파일럿사업(엘시스테마, 레지던시, 스쿨콘서트, 예술촌) ◦ 시민 문화기획자 발굴,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 ◦ 예술인 자립지원, 소규모 문화창업 지원 및 고도화 ◦ 문화창업 생태계 조성, 자생적 플랫폼 구축
	서산시	문화예술 신도시 해뜨는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레지던시, 어린이 예술학교, 청년문화 아카데미, 생활형 공연창작 프로그램, 도시브랜드 상품 공모 ◦ 청년문화 인턴십, 서산장인공방 네트워크, 돌레랑스 프로그램
문화마을	공주시	예술문화 맞춤형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 강화(관계형성, 교육 등) ◦ 지역경관 개선사업(용산9곡, 상여집 복원, 묘목식재, 큰샘 및 석축 복원), 체험장 축조 ◦ 축제 활성화(신야도원 대보름 기원제, 별밤축제, 꽃감만들기 축제 등) ◦ 진입로 정비 및 연출, 빈집 및 창고 리모델링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문화자원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자 및 공동체 리더 육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 파일럿사업(역사민속마을 관광프로그램 개발) ◦ 줄다리기 캐릭터 개발, 줄난장 정비, 줄제작 시현단 운영 ◦ 전통문화고도화 사업, 줄짚풀 소재 이벤트 및 놀이상품 개발 ◦ 줄다리기 문화콘텐츠 사업(음식, 의복, 기념품 등 문화상품화)
	부여군	근대 문화유산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교육), 커뮤니티공간 구성 ◦ 파일럿사업(가로환경 개선, 마을가꾸기, 민속행사 전승 등) ◦ 사업추진 전담기구 운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관광·체험프로그램, 빈방·빈집 소득사업 전개 ◦ 마을 안내 및 홍보사업 전개 ◦ 마을경관 개선사업(건물외관 경관조성, 자투리땅 에코파밍)
	홍성군	고암 이용노 예술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 강화 교육,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 운영 ◦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 주민 다큐멘터리 제작 ◦ '별의별'공간 조성, 주민제안 공공미술 제작, 아트상품 개발 ◦ 공간 활용 북카페 조성, 주민 아트레스토랑 운영 ◦ 작은미술관 숙박시설 운영,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예산군	대흥 옛 이야기 문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 강화교육, 스토리 개발 및 지도·책자 제작 ◦ 대흥 옛이야기 DB 구축, 대흥 옛이야기 센터 운영 ◦ 대흥 옛이야기 공원 조성, 짚풀각시 인형극 교실 운영 ◦ 음악교실 및 장터 운영, 마을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 마당극 제작 공연, 마을이야기 축제 연계 추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2)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충청남도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외에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12~2014년 사이에 진행된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콘텐츠 진흥사업’(태안군 대야도 마을, 청양군 산꽃마을, 홍성군 노은마을)의 후속사업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비와 시·군비, 마을별 자부담 사업비를 매칭해 주민역량 강화, 문화향유, 소규모 파일럿사업, 문화인재 육성,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1단계 3년, 2단계 2년으로 총 5년간이다.

[표 III-42]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단계	사업기간	개소 당 사업비(백만 원)	사업내용
지리적 인접하고 생활권 공유하는 주민 공동체	1단계	3년간	150(30/50/70) (도비 50%, 시·군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역량 강화, 문화향유 소규모 파일럿사업
	2단계	2년간	120(150/70) (도비 50%, 시·군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향유, 문화인재 육성 문화콘텐츠 개발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2015년 공모 결과 1단계 마을 3개소(보령시 용두행복문화마을, 금산군 상옥1리 마을, 홍성군 거북이 마을), 2단계 마을 1개소(부여군 꿈꾸는 백마강 마을)로 총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1단계 3개소, 2단계 3개소로 총 6개 마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 마을의 경우 2015~2017년이며, 2단계 마을은 2015~2016년이다. 전체 사업예산은 587.1백만 원으로 도비 285백만 원, 시·군비 285백만 원, 자부담 17.1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명을 살펴보면 각 시·군별로 지역의 문화자원, 인물,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보령시 행복문화마을은 ‘용두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금산군 상옥1리 마을은 ‘승당 임영신 인물 재조명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홍성군 거북이마을은 ‘거북이 마당놀이 재현 및 마당놀이 축제’, 부여군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은 ‘주민이 행복한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표 III-43] 충청남도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구분	시·군명	마을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백만원)	
총계 (4개소)	1단계마을 (3개소)	3개 시·군	-	2015~2017	도비	285
	2단계마을 (1 소)	1개 군		2015~2016	시·군비	285
1단계 마을	보령시	용두행복문화마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용두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2015~2017 (3년간)	도비	75
					시비	75
					자부담	4.5
	금산군	상옥1리 마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임영신 골목에서 노닐다!	2015~2017 (3년간)	총사업비	154.5
					도비	75
					군비	75
홍성군	거북이마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 마당놀이 재현 및 마당놀이 축제	2015~2017 (3년간)	자부담	4.5	
				도비	75	
				군비	75	
2단계 마을	부여군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	주민이 행복한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 조성	2015~2016 (2년간)	도비	60
					군비	60
					자부담	3.6
					총사업비	123.6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마을마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과 역사인물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을별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보령시 용두 행복문화마을의 경우, '용두 자원 네트워킹 통한 체험·관광 축제 개발' 사업 외에 '고운 최치원 유적지 동상 건립 및 공원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 상옥1리 마을은 임영신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임영신 골목거리 조성, 백일장, 전시회, 시화집, 사진집, 마을엽서 제작 등)을 진행 중이다. 홍성군 거북이마을은 '거북이 마당놀이'를 핵심 문화콘텐츠로 삼아 마당극 대본 제작, 놀이장비 제작, 마당극 축제화 등 다방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여군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주민 전수교육, 향토음식 경연대회 외에도 세시민속행사를 지역 축제로 개발하고 전통공예를 교육하는 등 지역 민속자원을 축제와 결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III-44] 충청남도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내용

구분	시·군명	사업명	사업내용
1단계 마을	보령시	용두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두마을 자원 활용 체험·관광 축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역량 강화(난타·풍물교실) - 용두마을 사진 전시관, 독살 체험장 개발 - 용두 자원 네트워킹 통한 체험·관광 축제 개발 - 고운 최치원 유적지 등상 건립 및 공원 정비 - 지역자원 활용 BI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 문화인재 발굴·육성 -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조성, 용두마을 상징물 조성
	금산군	임영신 골목에서 노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당 임영신 인물 재조명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역량 강화(마을역사·인물교육, 선진지 견학강연) - 나도 작가, 음악·춤·건강 강좌, 벽화, 조형물 설치 - 문화인재 발굴·육성 - 임영신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임영신 골목거리 조성, 백일장, 바자회, 공연, 전시회, 시화집, 사진집, 마을엽서 제작 등)
	홍성군	거북이 마당놀이 재현 및 마당놀이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무형자원 '거북이 마당놀이' 재현 및 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역량 강화(초청 교육, 학술 발표) - 마당극 대본 제작용 사료 조사 - 마당극 대본 제작, 놀이장비 제작, 마당극 물품 구입 - 마을축제, 행사 등에 출연하여 마당극 시연 - 마당극 축제화
2단계 마을	부여군	주민이 행복한 꿈꾸는 백마강 문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시민속의 지역 축제화 및 전통 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역량 강화(노래·취미교실), 전통공예(짚공예) 기능 보유자 발굴 - 지역농산물 활용 향토음식 개발, 마을 소식지 발간 - 세시민속행사 지역축제로 개발, 전통공예 교육 - 향토음식 주민 전수교육 및 향토음식 경연대회 추진 - 구곡지천 주민축제 광장 조성, 마을 꽃밭 조성 - 마을자원과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체험·관광형 축제 개발 -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조성, 용두마을 상징물 조성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3) 근대문화유산 재창조 자원화 사업

문화도시, 문화마을,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충청남도는 '근대문화유산 재창조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와 함께 '유구문화예술마을 만들기'(2014) 사업과 후속 사업으로 'Again 유구만들기'(2015)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표 III-45] 근대문화유산 재창조 자원화 사업 개요

시·군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 원)	사업내용
공주시 유구읍	유구문화예술마을 만들기	2014 (2013 사업비 이월)	1,000 (도비 50%, 시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섬유, 생활사, 근 현대사), 스토리텔링, 생 활사박물관 전시 ◦ 레지던시, 벽화, 골목길 조성, 아트벤치 조성, 워 크숍 등
	Again 유구만들기	2014~2015 (2014 사업비 이월)	2,000 (지특 70%, 도비 15%, 시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용역 중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11.17)

‘유구문화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에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1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 창의 아이디어 부문’ 공모에 선정되어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2015년 2월에 종료하고 사업비를 ‘Again 유구만들기’ 사업으로 이월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제4장.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방안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현황에 대한 인식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2) 조사 내용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 수립 여부 및 이유 조사

둘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현황 : 조례 및 계획 수립 현황, 관련 시설(산업유산 및 유희공간) 보유 현황,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문화지구) 조성사업 현황 조사

셋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중점과제 분야 : 시·군 시행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업별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수요조사, 관련 기 추진사업 현황 조사

넷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준비/필요사항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충청남도의 지원 사항, 시·군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

다섯째,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기대효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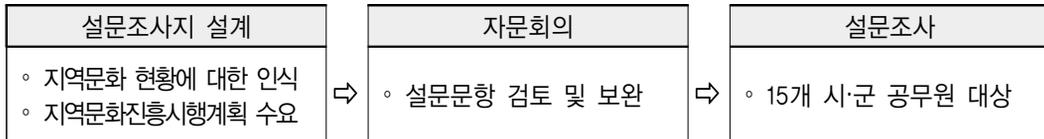
(3)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설문조사 응답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4) 조사 방법

실태조사 설문항목은 15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 현황(조례 및 계획 수립, 관련 시설), 중점과제 분야, 계획 수립 시 준비 및 필요사항, 기대효과를 묻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를 도출하도록 항목을 설계했다. 조사방식은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self-administered) 방식을 채택했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15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계획 수립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그림 IV-1〉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절차



이와 같이 시군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관련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각 시·군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1〕 충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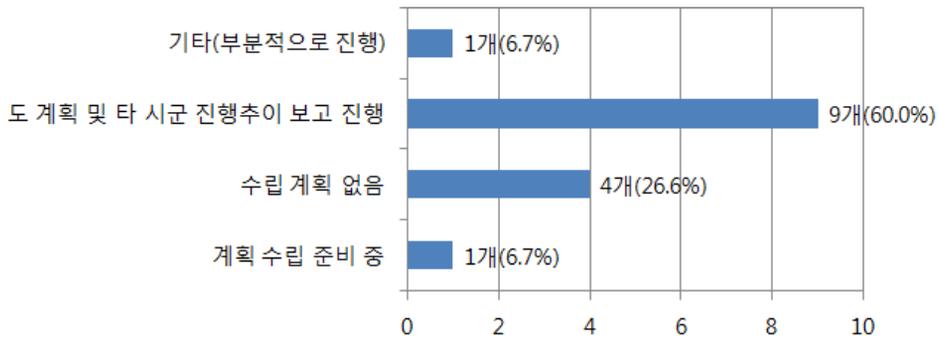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 대상	◦ 충청남도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조사 기간	◦ 2015. 10.21.~11.2.
조사 방법	◦ 설문조사지 배포 후 수거
조사 내용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 지역문화 현황(지역의 문화인력, 문화기반, 문화시설, 문화자원, 문화유산, 문화브랜드) 관련 인식 조사 ◦ 시행계획 수립의 걸림돌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지원) 사항 ◦ 시행계획 사업별 중요도 수요조사, 사업별 현황 인식 조사

2) 조사 결과

(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당진시의 경우 부분적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도 계획 및 타 시군의 진행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군이 9개, '수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시·군이 4개, '수립 준비 중'인 곳이 1개(보령시)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IV-2〉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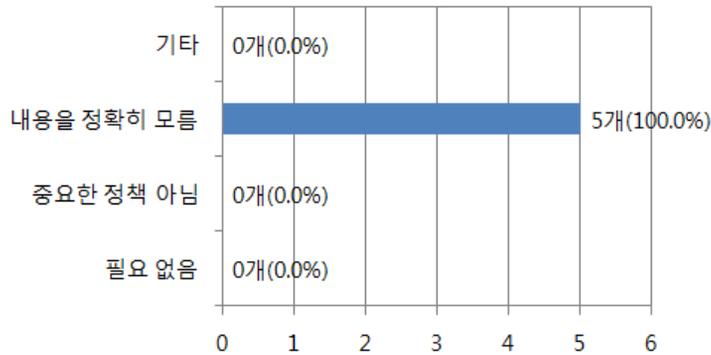
[표 IV-2]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여부

시·군명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여부
천안시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공주시	수립 계획 없음
보령시	계획 수립 준비 중
아산시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서산시	수립 계획 없음
논산시	수립 계획 없음
계룡시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당진시	기타(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산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부여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서천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청양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홍성군	수립 계획 없음
예산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태안군	도 계획 및 타 시·군 진행추이 보고 진행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계획이 없는 4개 시·군(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과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당진시의 경우, 그 이유를 모두 '내용을 정확히 모름(해야 되는지 모름)'이라고 밝혀 기초 지자체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침 전달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미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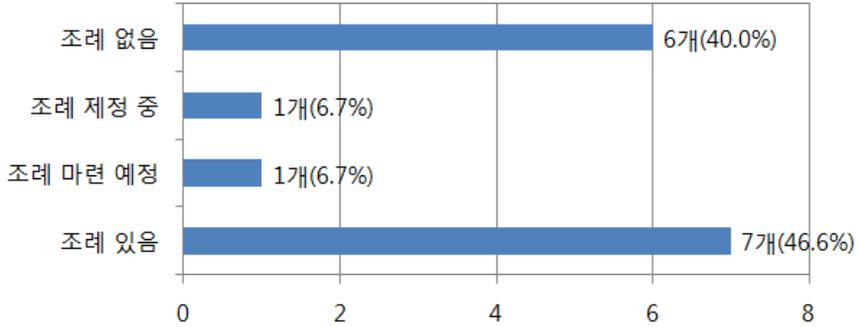


(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관련 조례 현황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시·군이 '조례 있음'(46.6%)이라고 답했으며 '조례 없음'이라고 응답한 시·군은 6개(40.0%)이며, '조례 제정 중'인 시·군과 '조례 마련 예정'인 시·군은 각각 1개(6.7%)로 조사되었다.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

지 않아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4〉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 수립 현황



[표 IV-3] 충청남도 시·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현황

시·군명	조례명	수립년도(년)
아산시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2
서산시	문화예술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2014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2013
계룡시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
당진시	당진시 문화진흥조례	2012
금산군	금산문화예술진흥을위한조례	2015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2015

한편,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한해 3년 이상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중점과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 중 각 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와 시·군 문화여건 상 과제별 우선적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중앙정부의 3대 대분류 과제(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에 따른 9대 추진과제(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가치 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에 대한 중요도(상, 중, 하)와 필요도(①~⑤)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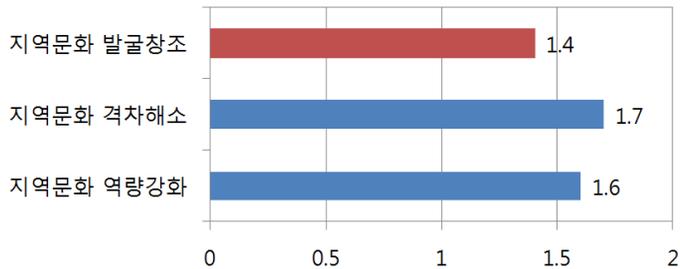
[표 IV-4]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2-3-2.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3-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3-3-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3-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3-3-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3-3-5.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과제별 중요도

과제별 중요도를 상, 중, 하, 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을 상(1점), 중(2점), 하(3점)로 점수화한 결과, 3개 대분류 과제 중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과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1.4점)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 역량강화'(1.6점), '지역문화 격차해소'(1.7점) 순이었다. 충남의 15개 시·군 행정 담당자들은 대체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지역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5〉 추진과제별 중요도 조사 결과(대분류)



9개 중분류 과제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가치 발굴'(1.2점)과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1.3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1.8점)이 타 과제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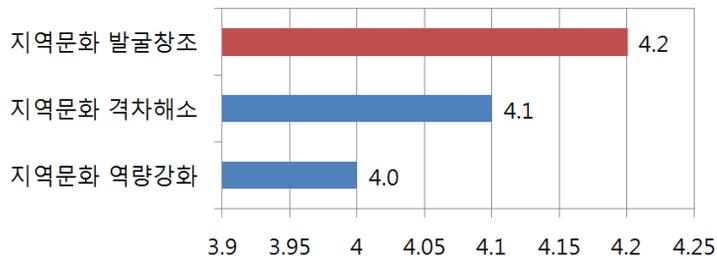
〈그림 IV-6〉 추진과제별 중요도 조사 결과(중분류)



○ 과제별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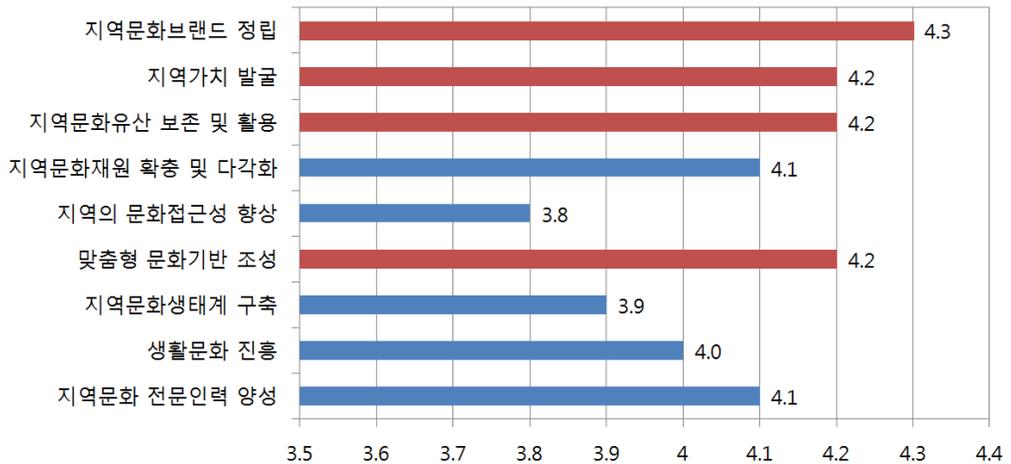
과제별 필요도를 5단계(전혀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 필요(5점))로 분류하고 각각을 1~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대분류 과제 중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과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4.2점)이고, 다음으로 '지역문화 격차해소'(4.1점), '지역문화 역량강화'(4.0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중요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그림 IV-7〉 추진과제별 필요도 조사 결과(대분류)



9개 중분류 과제별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브랜드 정립'(4.3점)과 '지역가치 발굴'(4.2점),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4.2점),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4.2점)이 타 과제에 비해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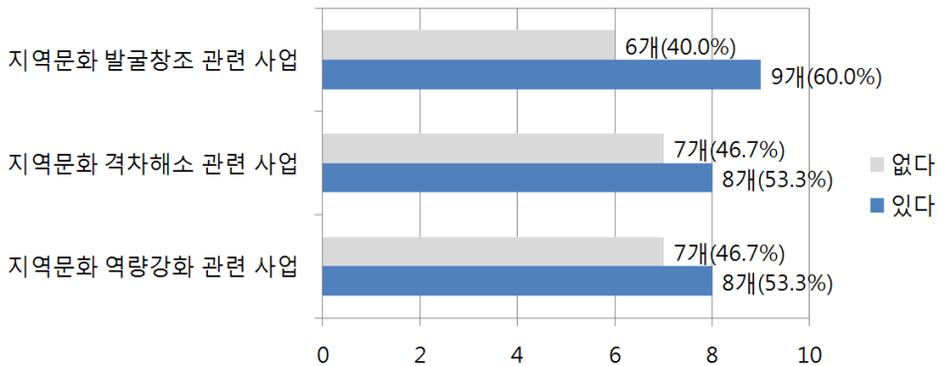
〈그림 IV-8〉 추진과제별 필요도 조사 결과(중분류)



○ 2015년 시·군 추진과제 중 관련 사업 현황

한편,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와 연계될 수 있는 시·군의 2015년 추진사업을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문화 격차해소' 관련 사업은 15개 시·군 중 8곳(53.3%)에서 추진 중이며, '지역문화 발굴창조'의 경우, 9개 시·군(60.0%)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중앙정부 기본계획 유관 시·군 2015년 추진사업 현황



추진사업 현황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와 부여군이 연계 가능한 사업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군에서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문화 발굴창조'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흥타령 춤축제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서산시는 '폐교 활용, 서산창작예술촌 운영', '지역문화찾기사업'을 운영 중이다. 계룡시는 '신도안 공연'을, 당진시는 '면천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부여군은 '규암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금강수상관광',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세계유산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은 '중고계 판소리 학교', 홍성군은 '만향 인물 발굴', 태안군은 '김언사 고택 보존'과 '안홍정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충청남도 시·군 2015년 지역문화진흥 관련 기 추진사업 현황

소속	구분	추진과제명	2015년시·군 추진사업명
천안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동아리지원, 한뼘미술관조성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예술뱅크(아카이브)사업추진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문화센터설치, 문화예술아카데미운영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문화재단기금확충(공연수입금등)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3-2. 지역문화 가치 발굴	원도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흥타령 춤축제의 브랜드화
공주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야외무대설치: 2개소 350백만원
		2-2. 문화접근성 향상	소외지역연예인활동지원: 12백만원 시민과함께하는예술마당: 70백만원 소외지역영화상영: 30백만원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 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보령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아산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온양문화원)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소속	구분	추진과제명	2015년시·군 추진사업명
서산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폐교 활용, 서산창작예술촌 운영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지역문화찾기사업 추진 중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개발 중
논산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리더십과정(건양대 협력)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행사(계절별 희망콘서트 개최)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계룡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계룡 예총 운영비 지원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계룡시문화예술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제정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2. 문화접근성 향상	이구동성 콘서트 개최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신도안 공연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당진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문화기반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근현대문화유산정비체제구축(2016)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면천은행나무천연기념물지정을위한 학술용역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금산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금산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소속	구분	추진과제명	2015년시·군 추진사업명	
	격차해소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부여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조성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문화기반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찾아가는문화활동, 소외지역연예활동지원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규암근대문화거리조성사업 금강수상관광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세계유산도시 조성	
서천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중고제 판소리 학교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청양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홍성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문화통합이용권 활용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만항 인물 발굴	

소속	구분	추진과제명	2015년시·군 추진사업명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예산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태안군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생태해설사, 관광학교
		1-2. 생활문화 지원	-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작은영화관건립
		2-2. 문화접근성 향상	-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김언사 고택 보존
		3-2. 지역문화가치 발굴	안흥정 학술조사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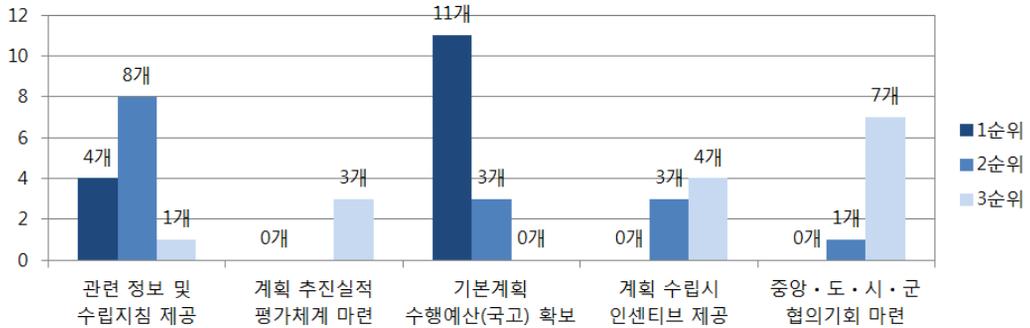
(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준비/필요사항

각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활발하게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기 중 우선순위로 3개 안을 선택하게 하고, 더불어 시·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 중앙정부 지원사항

먼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예산(국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1표(73.3%)를 얻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이 4표(26.7%)로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 전달과 지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2순위로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8개, 53.3%)이며, ‘기본계획 수행예산(국고) 확보’와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이 각각 3표(20.0%)를 얻었고, ‘중앙·도·시·군 간 협의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표(6.7%)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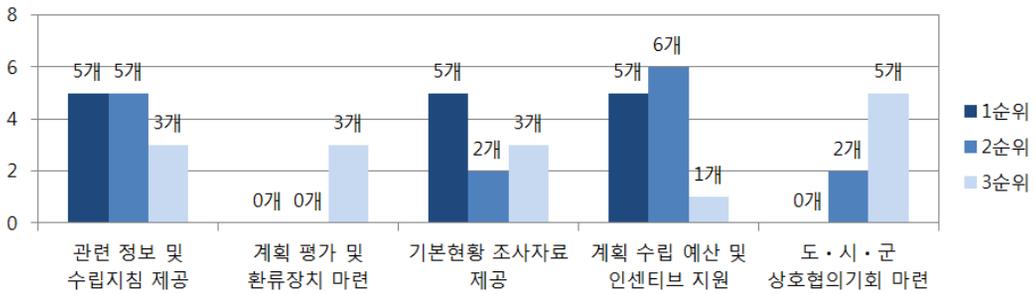
종합하면 1, 2, 3순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기본계획 수행예산(국고) 확보’(14표)이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13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 지자체와 연계해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와 수립지침을 제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충청남도 지원사항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이 각기 5표를 얻어, 도 차원에서는 정보 제공과 기본현황 자료 제공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지원사항도 1순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군이 충청남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13표),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12표),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10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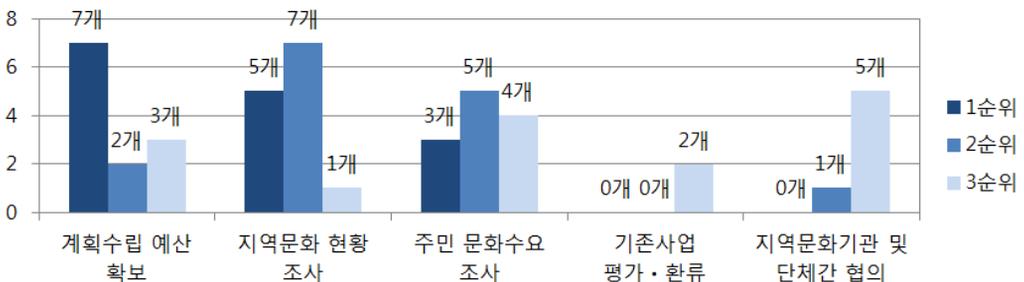


○ 시·군 사전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계획수립 예산 확보'(7표), '지역문화 현황 조사'(5표), '주민 문화수요 조사'(3표)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지역문화 현황 조사'(7표), '주민 문화수요 조사'(5표), '계획수립 예산 확보'(2표)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각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문화 현황 조사'(13표)와 '계획수립 예산 확보'(12표), '주민 문화수요 조사'(12표)를 지목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준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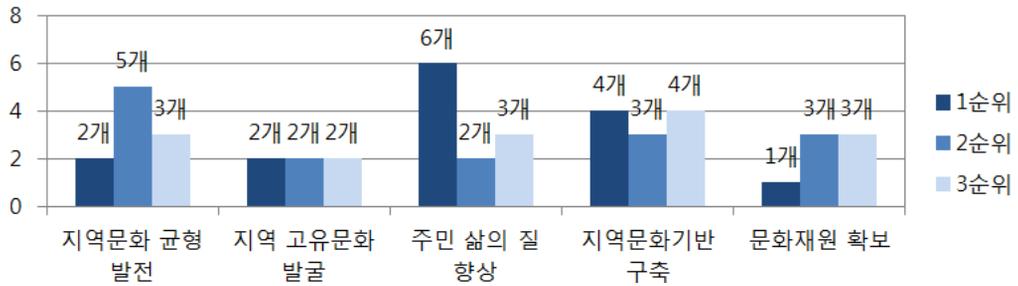
〈그림 IV-12〉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위한 시·군 사전 준비사항



(5)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전 부문에 걸쳐 비교적 고른 응답을 보였다. 1순위 효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6개, 40.0%)과 '지역문화기반 구축'(26.7%)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기반 구축'이 각각 11표를 얻어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2. 시·군 계획 수립의 일반적 과제

1) 지역문화진흥법의 효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

(1)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및 대응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법의 제정은 환영할 일이고, 법의 취지나 의의에 공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법을 실현시킬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 행정·정책입안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은 상위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야 하는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6조에 근거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시행계획>의 경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 광역시·도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초 시·군·구 역시 광역시·도와 연계되면서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15년 6월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을 발표했다. 충청남도는 그보다 앞서 2014년 7월에 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과 <문화비전>을 선포했다. 따라서 이제는 시·군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시행계획 수립을 당면하고 있는 시·군 행정·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못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점은 이번 전략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시한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이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5개의 시·군 중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 계획 및 타 시·군의 진행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립 계획이 아예 없는 곳도 네 곳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내용을 정확히 모름(해야 되는지 모름)'을 꼽았다. 조례 역시 절반에 가까운 시·군에서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 충청남도 내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시·군의 제도적·인적 기반의 취약함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정의 취지가 제 빛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지역문화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정책입안자의 인식과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법의 효용에 대한 행정·정책입안자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질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효용 차원에서 본 지역문화진흥법

법의 효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사안뿐만 아니라, 문제점 및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효용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지역문화진흥법의 네 가지 주요사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사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

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이 네 가지 주요사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성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주요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문화진흥은 제2장에 배치되었을 만큼 지역문화진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갖는다.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요소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생활문화 지원에 관련된 것이다. 주민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활동의 지원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책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시책이 필요함을 적시한 것이다.

제3장의 내용은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시책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명시하였다. 둘째, 지역문화 환경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사업단의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의 내용은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제반 법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의 직무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도시에 대한 심의 및 지정, 지원 사항, 지정 취소 등 문화도시 조성 및 관리 전반에 요구되는 중요사항이 위원회의 직무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5장에는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조직으로서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의 문제점 및 한계

「지방문화원진흥법」(1994)과 「문화기본법」(2013)에 이어 「지역문화진흥법」(2014)이 제정됨으로써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조광호, 2014). 본격적인 지역문화진흥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커다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은 문제점 및 한계도 많은 법이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의 활성화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 그 유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생활문화 관련 정책 수립 시에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광호, 2015)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생활문화를 분야별 장르 활동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적용하여 광의의 범위로 생활문화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둘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해당 인력의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이 규정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해당인력의 역할과 범주 설정의 명확화가 요구된다.(김홍규·이상열, 2014)

셋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시책이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근로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여건

개선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김규원 2014)

넷째,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문화재정 확충 시 이의 지원 여지는 열어두었지만, 거의 모든 광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자체 일보다는 정부의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서 재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도삼 2014)

다섯 번째 문제점은 네 번째 문제점과 연계된 것이다. 즉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계획 전달체계가 과연 수평적·순환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 특색”보다는 재원 확보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식의 수직적 정책전달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벌 규정이 없다.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받아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립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세웠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벌 규정이 없는 의무조항은 엄밀히 말해, 강제 요건이 아니다. 상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인식과 수동적 대응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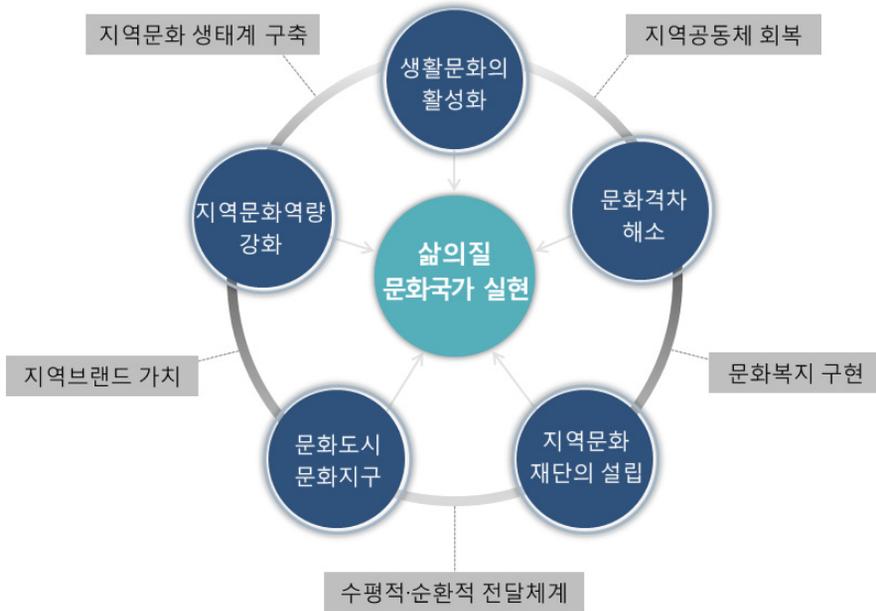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법」에 제기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방안을 마련하거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의 효용 및 핵심가치

살펴보았듯이,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라는 네 가지 주요사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생활문화, 지역문화전문인력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상벌 규정이 제시되지 않는 등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지역문화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이 되고 있다는 사건적 의미는 훼손되지 않는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사안과 문제점 및 한계를 공유하면서 이 법이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에 어떤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또 그 효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4〉 지역문화진흥법의 효용과 핵심가치



첫째, “생활문화시설”로 통칭되는 활동공간의 제공은 지역문화의 주체인 주민들이 가장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효용일 것이다.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격차 해소는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로, 지역 균형 발전 및 문화복지의 실현을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게 해준다.

셋째, 지역문화진흥기반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매개활동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성·전문성·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문화전문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계적 인력양성·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또 다른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에서 지역 문화전문인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은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한다.

넷째,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다.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지역 문화가치로 발굴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군의 자체 역량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에 선정되는 일은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진흥의 실질적인 실천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된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을 입안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방문화재단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를 수평적·순환적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수평적·순환적 정책전달체계를 지향하고 관철하려는 지역문화재단의 의지와 역량이 달려 있다.

2) 법률 및 상위계획과 체계 연관성 및 정당성 확보

시·군의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률 및 상위체계와의 연관성을 마련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역 특색”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둘째,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마지막으로 광역시·도 시행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행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시·군일수록 상위계획과의 체계 연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시행계획 관련 사항

먼저,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부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5조는 시행계획의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 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과제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언급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6] 시행계획 관련 법 조항 주요내용 요약

법 조항의 주요내용 요약	<p>■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문화진흥계획 2020>의 주요내용

두 번째로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9가지 추진과제와 31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IV-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2쪽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생태 구축'의 세 분야로 나뉜다. 눈에 띄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미흡하다고 제기되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세부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세부과제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이 협력과 상생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서는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과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로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를 꼽고 있다.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명기했지만,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과 '지역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는 문화환경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문화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문화 격차해소'의 추진과제들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충청남도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연계해볼 만하다.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가치 발굴', '지역문화 브랜드 세계화'를 제시하였다. 지역문화유산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자원이 풍부한 충청남도 시·군으로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위한 세부과제들과 연계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제 추진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세부과제인 '지역문화루트 개발'은 관광사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지역 문화브랜드 세계화'의 세부과제인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등은 세계적인 지역문화상품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재생이다.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별 인구변화와 수요를 감안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의 창조적 재생'등 공간 조성 과 재생을 통해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를 창

출하려는 것이 중앙정부 기본계획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과제들과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추진과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IV-7]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31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생활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시설 확충·운영 지원(생활문화기반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진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인구변화와 수요 감안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추진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 유산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루트 개발(점→선)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지역문화 가치 발굴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텐츠 사업 기반 마련
	지역문화 브랜드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확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3~38쪽 참조.

(3)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충청남도 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성내용, 광역지자체의 문화예술 역량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이므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충분하다. 문화로 행복한 지역과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에서부터 4대 목표와 10대 전략, 추진과제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충청남도 시행계획은 “문화로 도민에 행복을, 충남에 미래를”이라는 비전 아래, ①충남의 인문정신 전통과 지역 생활문화에 기반 한 행복한 공동체 형성, ②문화예술·역사유산의 교육·향유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 창조사회기반 형성, ③문화유산과 예술에 산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지역 재생과 내생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4대 목표는 첫째,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창의성 확산, 둘째, 생활 속에서 문화의 보편적 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셋째, 충남의 인문정통에 기반 한 문화정체성 확립, 마지막으로 충남 문화유산과 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다.

충청남도 시행계획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 4개 부문의 진흥계획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개 부문별 진흥계획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에 26개의 추진과제, 문화유산 부문에 27개의 추진과제, 문화산업에 16개의 과제, 문화관광에 16개의 과제, 도합 85개의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세부계획 중이다.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특징은 첫째,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지역가치로 발굴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문화유산 부문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부문, 문화산업 부문, 관광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추진과제의 수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중 하나인 ‘지역문화 창조발굴’에 전면적으로 부합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것이다. 지역 문화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한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색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두 번째 특징은 지역문화역량의 강화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과의 연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지역 문화예술 매개역량 강화’에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활성화’,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 기반형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이 문

화예술과 접목된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지역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문화예술 치유형 복합센터(힐링콘텐츠센터)구축',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이, '문화예술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충남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 구축', '충남형 문화지표 및 문화예술 정책평가체계 구축' 등이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과제들은 기본계획의 '지역문화역량'을 위한 추진과제들과 연계되면서도 지역 특색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에서 아쉬운 점은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애주기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문화나눔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계획이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추진전략으로 세웠고, 문화환경이 열악한 시·군이 많은 만큼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IV-8] 충청남도 시행계획 부문별 추진전략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
충남의 인문과 전통을 살린 문화예술창작기반 조성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충남 지역문화기반 대표 콘텐츠 개발	역사·예술에 기반한 거점 화관광도시 개발
충남지역 문화예술 매개역량 강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정비·복원 및 관리	문화융합 창조경제 허브 구축	인문정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창의적 활용	문화산업 창의역량 강화 및 기술 양성	전통민속과 예술에 기반한 특색 있는 축제·이벤트 육성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의 재창조	백제문화 재조명	문화콘텐츠 향유 및 문화마케팅 확대	전통음식과 특산품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문화예술 정책기반 조성	내포 문화자원 개발		
	충남(기호)유교문화 선양		
26개 추진과제	27개 추진과제	16개 추진과제	16개 추진과제

총 85개 추진과제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3) 지역별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 수립

(1) 누가,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행정·정책 입안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향후 5년간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최종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민간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제21조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9] 시행계획 관련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명시한 법률의 주요내용

법조항의 주요내용	<p>■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 시행령 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p> <p>①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제는 충남 시·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질적 주체이자, 민간협력 파트너인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세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관련 단체들이 시·군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예회관의 경우, 천안시에 3개, 나머지 지역에는 1개씩 총 17개가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경우는 천안시에 2개, 계룡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개씩 총 15개가 있고, 문화의 집은 금산군에 2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에 1개씩 총 7개가 있다.

[표 IV-10] 충남 시·군의 지역문화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수

(단위 : 개소)

구분	문화재단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천안시	1	3	2	-
공주시	-	1	1	1
보령시	-	1	1	1
아산시	1	1	1	-
서산시	-	1	1	-
논산시	-	1	1	-
계룡시	-	1	-	1
당진시	1	1	1	1
금산군	-	1	1	2
부여군	-	1	1	-
서천군	-	1	1	1
청양군	-	1	1	-
홍성군	1*	1	1	-
예산군	-	1	1	-
태안군	-	1	1	-
합계	4	17	15	7

주*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는 각각 기초문화재단이, 홍성군은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이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만 놓고 보아도 충청남도 내 시·군의 지역문화역량은 편차가 심하다. 천안시, 당진시처럼 문화재단,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골고루 갖춰 지역문화역량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 넘는 시·군에서는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만이 있어 지역문화역량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적용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공하기란 어렵다. 지역의 사정

을 가장 잘 아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입안자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누가’ 시행계획을 짤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역 문화역량의 형편에 맞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각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담당 주체와 행정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민관 협력 파트너가 되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한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의 문화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문화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는 현장답사의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문화지표조사 등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현황 조사와 주민의 문화적 수요 조사는 시행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지역문화지표 조사결과의 활용

시행계획 수립에서 강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는 “실정에 맞게”,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세우려는 것이다. “지역 특색”이란 말은 흔히 지역특산품이나 문화관광 자원과 연결되기 쉬운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를 정의한 의미에서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즉,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할 때,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살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역문화지표 조사다. 지역문화지표란, 지역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지역문화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의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다. 그것은 추상적인 지역문화의 구축과 발전정도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본 틀이며, 보다 효과적인 지역문화정책 방향정립의 토대가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2년 전국 158개 광역도 소재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지표조사를 실시했다. 6개 분야 54개 세부 지표 확정하고, 실현가능성·실현성·적합성을 고려해 38개 시범지표를 선정, 조사한 것이다.

[표 IV-11] 시범적용 지역문화지표

구분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인프라	문화자원	향유 및 복지
시 범 적 용 지 역 표	지역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여부	인간문화재 수	문화원 사업비 총액	작은 도서관 수	국가지정 유형 문화재 수	문화향유 위한 무료공연 건수
	문화 분야 발전 위한 보고서 발간 수 (최근5년)	지역문화재 대비 문화재관리 인력비율	문화예술단 체 지원총액	인구 천명 당 서점 수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 수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수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 원 설립 유무	학예사 수	지역문화예 술인 대상 공모사업 지원 건수	대표공연장 가동일 수 대표전시장 가동일 수	인구 천명당 지역축제 수	지역별 문화이용권 발급대비 이용률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규모	문화복지 전문인력 지역별 배치 수	등록 문화예술단 체 수	문화시설 관람객 수	1인당 도서장서 수	지역별 문화이용권 예산대비 집행률
	인구 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	사서1인이 감당하는 도서대우 인구 수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면적대비 문화 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문화정책 인력 수	사서 1인이 감당하는 장서 수		축제 및 문화행사 지출액(인구대비)		
	문화 분야 공무원의 근속년수	인구 천명당 사서 수		인구 천 명당 문화사업체 수		
				문화산업 분야 매출액		
				문화산업분야 종사자수		
	38	7	7	5	11	4
(안)	지역문화정책 업데이트 여부	노동부 지정 공예분야 명인 수	지자체 관리 문화동호회 동아리 수	문화관련 특성화 지구 여부	고유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및 사업개발 수	전체 인구 수 대비 예술행사 관람율
	연구보고서 발행 후 문화정책 입안 수	여성공무원, 학예사, 복지사 수		각 지역의 예총 및 민예총 지부 설립 여부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개발 수	예술창작 발표활동 횟수
	성인지 문화정책 수립 유무	예총 및 민예총 지부 회원 수		문화시설 내 어린이 보호시설 유무		문화예술 관련 지출 총액/인구 수
						문화예술 관련 기획 제공/인구수
54	10	10	6	14	6	8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 보고서

정책, 인력, 활동, 인프라, 자원, 향유 및 복지 6개 분야에서서 선정된 38개의 세부지표를 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나온 지역문화지표의 결과를 단위면적, 단위인구 등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이 '지역문화지수'(Z-score)다. 지역문화지수란,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제반요인을 포괄하여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정책지수, 인력지수, 활동지수, 인프라지수, 자원지수, 향유 및 복지지수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지역문화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문화인력'과 '정책예산', '문화향유'로 밝혀졌다. 사람, 재원이 확보되고, 문화향수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지역문화지수의 결정 요인이라는 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지역문화지수 값이 '0'이상으로 도출된 지역은 지역문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 및 확산·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지수 값이 0이상으로 도출된 지역이 전국 63개 지역에 이르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가 이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지역문화지수 도출 결과-충청남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 보고서

* 진한 색으로 표시된 지역(아산시, 공주시, 계룡시)는 지역문화지수 값이 0 이상으로 도출된 지역

[표 IV-12] 지역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목록

구분	중분류	지표
지역문화정책	정책수립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여부 최근 5년간 문화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 수
	정책실행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유무 인구 천 명 당 문화행정인력 수 문화 분야 담당 공무원의 근속 년 수
	정책예산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 인구 천 명 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
지역문화인력 /자원	문화유산	인간 문화재 수 국가지정 유형 문화재 수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 수 지역문화재 대비 문화재 관리 인력 수
	문화인력	학예사 수 문화복지 전문 인력 배치 수 인구 천 명 당 사서 수 사서 1인이 감당하는 도서대여 인구 수
	문화자원	사서 1인이 감당하는 도서 장서 수 인구 천 명 당 지역축제 수 1인당 도서장서 수
지역문화활동	활동지원	문화원 사업비 총액 지역문화예술인 대상 공모사업 지원예산 총액 지역문화예술인 대상 공모사업 지원건수
	활동현황	등록 문화예술단체 수(공연단체) 인구 천 명 당 도서 대여 수
지역문화 인프라	문화시설기반	작은 도서관 수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면적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 당 문화사업체 수 인구 천 명 당 서점 수
	문화환경 조성	시군별 축제 및 행사경비 지출 금액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 수
	문화시설 성과	문화시설 관람객 수 문화산업분야 매출액
	문화시설 활용	대표 공연장 가동일 수 대표 전시장 가동일 수
지역문화 향유 및 복지	문화향유	각 지역별 문화향유를 위한 무료 공연 진행 수 지역별 지자체 진행 문화예술프로그램 수
	문화복지	바우처 사업 문화이용권 발급 대비 이용률 바우처 사업 문화이용권 예산 대비 집행률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 보고서

지표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지수에서는 계룡시의 지수값이 크게 나왔고, 공주시, 보령시의

지수도 '0' 이상 도출되었다. 문화인력·자원 지수에서는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이 '0' 이상으로 도출되었고, 문화활동지수가 '0' 이상으로 도출된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청양군이다. 문화인프라지수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가 '0' 이상 도출되었고, 문화향유복지지수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이 '0' 이상 도출되었다.

문화정책지수와 문화인프라지수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지수와 문화향유복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예산군은 군 단위만 분리하여 대분류별 지수 값 순위를 도출한 결과에서 향유복지지수에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IV-13] 지역문화지수 값이 '0' 이상 도출된 충남 시·군

구분	문화정책	문화인력·자원	문화활동	문화인프라	문화향유복지
천안시			○	○	○
공주시	○	○	○	○	○
보령시	○				
아산시		○	○	○	○
서산시		○	○		○
논산시					○
계룡시	○		○		
당진시		○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청양군			○		
홍성군					
예산군					○
태안군					
합계	3	5	6	3	8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각 지역별로 도출된 지역문화지수 결과를 반영하여 도별 문화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는데,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충청남도, 2014).

■ 충청남도: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 인프라 구축

- 충청남도의 경우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인력 및 자원 지수, 활동 지수, 향유 및 복지 지수가 0 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문화정책 및 문화인프라 구축 정도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보령시, 공주시, 계룡시 총 3개의 지자체에서만 정책 지수가 0 이상으로 나타났고,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총 3개의 지자체에서만 인프라 수치가 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책과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과 문화향유 및 복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인력의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것에서 기인한다.
- 정책 및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책 및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경우, 보완된 요소들이 인력 및 자원과 연계되어 지역문화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 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간하여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학계와의 민관협력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내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정책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더 많이 개발하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2012년 말에 실시된 지역문화지표 조사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문화트렌드는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또한 끊임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현재 지역문화의 환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역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충남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 문화자원, 문화기반의 크기는 제각각이다. 모든 문화지수에서 큰 값을 보임으로써 지역문화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많다. 지역별 문화 환경의 큰 편차는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하나의 매뉴얼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지역의 실정과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문화지표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여 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짤 때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①정책의 기본방향, ②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④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①정책의 기본방향을 잡는 일과 ②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시행계획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인 SWOT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WOT 분석이란,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해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찾아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강점은 내부분석에서 유리한 것, 약점은 내부분석에서 불리한 것, 기회는 외부분석에서 유리한 것, 위협은 외부분석에서 불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SWOT분석에 의한 마케팅은 4가지 전략으로 이뤄진다. SO(강점-기회)전략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SI(강점-위협)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WO(약점-기회)전략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WI(약점-위협)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그림 IV-17〉 SWOT 분석의 사례-춘천시문화재단



자료: 춘천시문화재단(2013),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춘천시문화재단의 SWOT 분석 사례를 보면, SWOT 분석으로 어떻게 비전과 정책방향, 추진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먼저, 풍부한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춘천시문화재단의 강점(S)이다. 이러한 강점이 외부적 요인인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기회(O)와 연결되면 “기반시설-향유자의 연결고리 구축”이라는 강점-기회 전략을 낳는다. 강점-기회 전략은 비전 및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 발전전략 및 운영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춘천시문화재단의 약점(W)이다. 이 약점이 기회(O) 요인과 연결되면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이라는 추진과제를 낳게 된다. 다음으로, 문화소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문화소비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춘천시문화재단의 외부적 위협(T) 요인이다. 이 위협 요인이 강점(O)과 연결됨으로써 “문화소비권 형성을 통한 문화생태계 복원”이라는 비전 및 정책의 기본방향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문화재단의 내부적 약점(W)이 외부적 위협(T) 요인과 만나면 “역할 확대를 통한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추진과제를 낳는다.

이와 같은 방식의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기회와 강점-위협은 정책의 비전 및 기본 방향이 되고, 약점-기회와 약점-위협은 추진과제로 삼을 수 있다. 시행계획 수립의 실질적 주체인 행정·정책 입안자는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강점-기회 전략과 강점-위협 전략에 따른 지역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타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 강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업들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문화 벤치마킹의 추세가 심화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결과 위주의 지역문화가 팽배해지는데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시행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업들 중 의미와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새롭게 수립되는 시행계획 속에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상위계획과 연계 가능한 시·군의 기 추진사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가 강조되었다. 충청남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문화 발굴창조-지역문화 역량강화-지역문화 격차해소의 순서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당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15개 시·군 행정 담당자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에서 지역문화 발굴창조-지역문화 역량 강화-지역문화 격차해소의 순서로 과제별 중요

도가 높다고 답했다. 시·군 행정 담당자들은 대체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지역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은 타 과제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과제별 필요도에서도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지역가치 발굴-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맞춤형 문화기반 조성의 순서로 '지역문화 가치발굴'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시행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적인 지역문화브랜드로 발굴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자긍심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문화산업과 문화관광 부문에 지역문화정책이 집중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라는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도록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추진과제의 안배에 균형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과제가 중점적으로 더 개발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과제와 연계될 수 있는 시·군의 2015년 추진사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문화 격차해소' 관련한 사업은 15개 시·군 중 8곳(53.3%)에서 추진 중이었으며, '지역문화 발굴창조'의 경우, 9개 시·군(60.0%)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부여군이 연계 가능한 사업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시·군에서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문화 발굴창조'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흥타령 춤축제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서산시는 '폐교 활용, 서산창작예술촌 운영', '지역문화찾기사업'을 운영 중이며, 계룡시는 '신도안 공연', 당진시는 '면천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부여군은 '규암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금강수상관광',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세계유산도시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천군은 '중고제 판소리 학교', 홍성군은 '만향 인물 발굴', 태안군은 '김언사 고택 보존'과 '안흥정 학술조사'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와 필요도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던 ‘지역문화 격차 해소’ 관련 사업도 실제로는 지역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천안시의 경우, 생활문화동아리지원, ‘한뼌미술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공주시가 ‘소외지역연예인활동지원’, ‘시민과함께하는예술마당’, ‘소외지역영화상영’ 사업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계절별로 희망콘서트를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며, 계룡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구동성 콘서트’ 사업과 함께 지역특성화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부여군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소외지역연예활동지원’ 사업을, 홍성군이 통합문화이용권 활용사업, 태안군이 ‘작은영화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15개 시·군에서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격차 해소는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 기본계획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소다. 법률 및 상위체계와 연계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문화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주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충남 시·군이 경우,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위한 추진과제는 지역 특색을 더 강화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부족한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는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 추진되고 있는 상위체계 사업 활용

: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기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경우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추진과제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고, 자원 확보가 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응용함으로써 체계 연관성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계획이 있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중앙정부의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활문화의 활성화’다.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권의 확보인 동시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시설,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생활자치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고시했다.

[표 IV-1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4항 규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미디어시설	지역주민을 대상의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2014년 10월 27일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그보다는 생활문화시설의 구성, 운영방식, 운영주체 및 인력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참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건립이 아닌, 유휴시설(폐지 또는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 및 기존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기타 공공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IV-15] 생활문화센터 유형 및 구성

구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위치	시·군·구 당 적정 수 설치 (인구 규모·면적에 따라 복수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기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 ① 동호회, 주민교류 등 생활문화시설 ② 생활문화 컨설팅·정보제공·교육 ③ 생활문화시설 간 협력 - 공간 대여, 합동 공연·전시, 축제 등	기초 생활문화 접점 활동 공간 ※ 소규모 동호회 활동 및 주민교류 공간 제공
시설	기본시설 및 공연·전시시설+지역지원 기능 ◇ 공간구성 예시 ◦ 동호회 공간-회의실+연습실+발표 공간 공연장 혹은 다목적홀 ◦ 생활문화 활동지원(선택)-기자재 지원, 창작 지원, 정보제공공간 등 ◦ 특성화시설(선택)-공작실, 영상미디어실, 도서자료실, 문화카페 등 기타 복합문화 기능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 공간구성 예시 ◦ 동호회 회의실(3개 내외) ◦ 소형 연습실 ◦ 교육·체험실 ◦ 주민쉼터
※ 상기 공간 구성은 예시이며, 각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구성 권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

생활문화센터는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거점형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생활권형은 소규모 동호회 활동 및 주민 교류 공간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문화들이 교류되는 접점 활동공간으로 기능한다. 시설의 구성에서 거점형은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간) 혹은 공연장을 기본시설로 갖추고, 공방, 스튜디오(녹음실, 영상편집실),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북카페(공용서재), 키즈카페, 문화카페, 레시던시, 상담실 등 특성화된 시설을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이에 반해 생활권형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운영방식에서는 기존 문화센터 방식의 관람형·강좌형이 아니라, 체험형·생활밀착형·세대통합형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운영주체는 시설 규모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시키거나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되, 동호회 활동,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율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표 IV-16] 생활문화센터 운영주체 및 인력운영 모델

구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운영주체	행정지원형(지자체 운영)과 민간협력형(민간위탁) 병행			민간협력형 또는 주민자율형(주민운영위원회) 병행		
인력 운영	업무내용	구분	인력	업무내용	구분	인력
	운영총괄	센터장	1명(상근)	운영총괄	운영위원회장	1명(비상근)
	사업개발 및 운영	기획운영	1~2명(상근)			
	네트워킹 및 거점지원	협력지원	1~2명(상근)	상근직원		1명 이상
시설유지 관리	관리운영	1~2명(상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

주민 주도의 자율적·지속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자원봉사자 제도의 도입은 시·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주민 주도의 자율적·지속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자원봉사자 제도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문화자원봉사자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공간 및 문화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을 말한다. 문화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생활문화시설에의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마을 단위 생활문화 확산의 매개자로서 문화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전병태, 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생활문화시설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시설의 형태와 규모, 운영방식, 운영주체, 인력운영방안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지역특성,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계획> 외에도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시작하였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영화관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영화관을 지자체와 함께 건립하

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설이나 신규 건립 시 적합한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하면 건물 리모델링 등 상영관 구축비용 및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의 연계사업으로 2014년부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영화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서천군과 예산군이 선정되었고, '2016년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는 금산군과 태안군이 선정되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중앙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지원을 받아 설립될 수 있으므로,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 추진되고 있는 상위체계의 사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지만, 문화환경이 열악한 시·군 차원에서 개발되는 정책과 사업이 가장 창의적이고 적실한 것일 수 있다.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시·군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여 광역시·도나 중앙정부에 사업을 제안하여 실행시키는 역발상의 시도도 필요하다.

3.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군의 과제

1) 중앙정부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방안

지역의 문화 관련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단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서 법의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달체계와 협력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1순위로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예산(국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2순위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관련정보 및 수립 지침 제공'이었으며, '기본계획 수행예산(국고) 확보'와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이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중앙·도·시·군 간 협의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낮은 표를 얻었다. 종합하면, 1,2,3 순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기본계획 수행예산(국고) 확보'이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이다.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지역문화지표 조사 결과에서, 지역문화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문화인력, 정책예산, 문화향유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앙부처 소관의 지역문화사업이 대규모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문화 관련 재정의 지특회계 전환과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열악하다. 지역의 전체 예산에서 문화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문화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행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달체계와 협력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중앙·도·시·군 간 협력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해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민간 주체들과 행정기관의 정책담당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행계획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이 신속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력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며, 이는 수평적·순환적이어야 할 전달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협력체계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행정·정책 입안자들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착수하겠다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수평적이고 순환적인 협력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써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와 수립지침을 제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도·시·군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과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예산 확보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의 제공에 있다면, 충청남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수립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실상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타 시·군 사례 워크숍>(2015.11.26, 이하 타 시·군 사례 워크숍)에서는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에서 모여야 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는 도가 의지를 갖고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문화의 주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되며, 지역의 문화 패러다임, 방향, 쟁점을 바꾸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시행계

획 수립에서 도의 역할과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각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각 시·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시·군에서 계획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문화 현황 조사', '계획수립 예산 확보', '주민 문화수요 조사'를 지목했다. 지역문화 현황조사와 주민 문화수요 조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데 반해, 이 과정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시·군 사례 워크숍>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 차원에서 수평적이고 순환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내는 것이 충청남도의 과제라면, 시·군 차원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책 입안자가 협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고,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라운드테이블, 오픈테이블, 포럼,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수요가 반영된 시행계획의 수립이야말로 주민들이 생생히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자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 부문에 걸쳐 고른 응답을 보였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기반 구축'이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계획 수립이 시·군의 행정·정책 주체들에게 당장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만 한다면 지역문화진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느냐 마느냐는 충청남도와 시·군이 각자의 과제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행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연구함의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기초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제안과 지침을 담고자 했다.

우선, 15개 시·군 문화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립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 충남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지역문화의 진흥에 어떠한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행정 및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과 시행령, 상위계획인 중앙정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의 담당자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참고로 계획 간 체계적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타 시·군의 사례 조사를 통해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과 기본내용도 제시했다. 계획 수립의 필요사항은 ①실행력 있는 사업 발굴, ②읍·면·동 단위 사업 조사, ③지역주민·예술가(단체) 수요 조사, ④광역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이며, 시행계획의 기본내용은 ①지역문화 여건 분석, ②주민 문화향유실태 조사, ③지역 예술가·단체 수요조사, ④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사업 제시 등이다.

이와 같이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중앙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이며 시·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우선 중앙정부는 현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확보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평적이고 순환적인 협력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써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와 수립지침을 제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수립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 ‘기본현황 조사자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실상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2.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겠지만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만큼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적’ 제언보다는 ‘절차적, 방법론적’ 제언을 하고 바로 다음 절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 구성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문화재단과 공신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단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단체, 문화시설, 행정을 매개하는 광범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문화예술가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충남의 15개 시·군 중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3곳뿐인데다 조직 역량 상 직접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곳은 그보다 더 부족하여 아직은 문화재단만으로는 계획 수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소재한 정책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학계와 행정,

지역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문화재단과 거버넌스 구조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시·군이 각종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어렵지 않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획 수립 절차 상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전문인력,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곧 계획의 수혜자이자 향유자, 매개자, 참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간과하고 이들의 수요와 동떨어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계획은 수립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단위가 문화재단, 연구기관, 행정, 어느 곳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단체 등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획 수립의 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계획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타 시·군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고 변용한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수립한 유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참조하는 한편, 계획을 수립한 시·군 담당자와 정책전문기관과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읍·면·동 단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반영한다. 기초 시·군 단위 시행계획에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의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영역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읍·면·동 단위의 관련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광역 시·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선정해 기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사안들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시·군의 행정·정책입안자들이 법제도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시행계획 수립의 실질적 주체인 행정·정책 입안자들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정책 입안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 및 수립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마다 문화환경에 차이가 있고 문화역량의 수준도 제각각이다. 매뉴얼화 된 수립지침이 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에 내재된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존중하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문화자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수립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수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무엇을 중점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안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사안은 크게 지역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선정,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시행령과 꼼꼼히 비교하여 인지해두어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비전, 정책방향, 추진과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은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라는 3대 추진전략에 따라 9가지 추진과제와 31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행계획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관광의 4개 부문별 진흥계획에 따라 도합 85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시행계획과 연계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체계 연계성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현황과 주민들의 문화수요가 파악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시행계획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현황은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인프라, 문화자원, 복지 및 향유 등 지역문화지표 조사의 분류범주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들의 문화수요는 라운드테이블, 포럼,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집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넷째,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를 SWOT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점-기회와 강점-위협은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으로, 약점-기회와 약점-위협은 추진과제로 삼을 수 있다.

다섯째, 정책의 비전 및 방향을 정하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선정할 때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은 과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추진과제를 선정할 때는 상위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속에서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행계획에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확충에 대한 시책 마련,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지만,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시·군 차원에서 개발되는 정책과 사업이 가장 현실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여 광역시·도나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여 사업을 실행시키는 역발상의 시도도 가능하다.

여덟째,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의 핵심적 요소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방

안이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성과 전문성, 현장성을 갖춘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개별 시·군 차원에서 단독으로 세우기는 어렵고, 도·시·군의 협력 하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시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화방향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당장 시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과제가 있는가 하면, 5년을 투여해도 성과가 없거나 더디게 나타나는 추진과제도 있을 수 있다. 추진과제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을 배치하고, 연차별로 어떤 성과를 산출하며 지역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림이 연차별 사업화 방향에서 드러나야 한다. 연차별 사업화 방향에 따른 예산의 상정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시행계획은 화려한 비전이나 거창한 목표보다는 쉽고 간명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비전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과제 역시 구색을 갖추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지역정체성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추진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약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역주민들이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의 제시. 이것이 수행계획 수립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이현식. 2012. 『성찰적 창조도시와 지역문화』, 글누림
임재해. 2004.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논문

- 강동진·이석환·최동식. 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7~20쪽.
김연진. 2009.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21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5~207쪽

□ 연구보고서

- 김규원. 2014.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홍규·이상열. 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2009.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계획」
박찬욱. 2013.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주문화재단. 2014. 『원주문화비전 2020』, 원주문화재단

- 전병태. 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정숙. 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 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우석. 201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춘천시문화재단. 2013. 『춘천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 수립 연구』, 문화컨설팅 바라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2015.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 자료집
- 홍석준. 2008. “지역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2008 문화의 달 기념 학술 세미나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법률 및 조례

- 문화기본법(법률 제12134호) 신규제정 2013.12.30.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09호) 신규제정 2014.07.28.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01.28.

□ 기타

- 김보성. 2014.12.11.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의 미래”, <문화빵> 52호, 문화연대
- 라도삼. 2015. 6.11. “유감스런 <지역문화진흥법>, 그 실태에 대한 소고와 개정방향 제안”,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화연대 대안정책포럼
- 안준철. 2015. 5. 12. “문체부, 충남 2곳 생활문화센터 조성”, <대전MBC>

□ 부록1. 설문조사지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남연구원은 원내 과제인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인 기초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지의 결과는 향후 충남 각 시·군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10. 20.

연구 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 과제명 :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자 : 최영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yhc@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계획명	조성기간(년)	조성사업 주체(부처)	사업예산(백만원)	
*(예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2009~2030	문체부, 공주시, 부여군	국비	400,100
			지방비	501,900
			민자	355,700
			총 사업비	1,257,700
	~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C.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중점과제 분야

5.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에 제시된 추진과제입니다. 아래 과제 중 각 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상, 중, 하)는 무엇이며, 시·군 문화여건 상 과제별 우선적 필요도는 어떠합니까?

※ 다음 페이지 <참고>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시오.

추진과제		중요도			1점 ←-----필요도-----> 5점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문화 진흥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3-2. 지역가치 발굴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 참 고 》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지역문화 역량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2)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2-3-2.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3)지역문화 발굴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3-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3-3-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3-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3-3-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3-3-5.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6. 귀 시·군의 2015년 추진사업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기입해주시시오. (*사업 중복 기재 금지)

구분		추진과제명	2015년 시·군 추진사업명
(1)지역문화 역량강화 관련	① 있다(⇔)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② 없다(↓)	1-2. 생활문화 지원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2)지역문화 격차해소 관련	① 있다(⇔)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② 없다(↓)	2-2. (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2-3. 문화자원 확충 및 다각화	
(3)지역문화 발굴창조 관련	① 있다(⇔)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② 없다(↓)	3-2. 지역문화 가치 발굴	
		3-3.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D.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준비/필요사항

7. 귀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② 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③ 기본계획 수행예산(국고) 확보
 ④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 ⑤ 중앙·도·시·군 협의 기회 마련 ⑥ 기타()

8. 귀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관련 정보 및 수립지침 제공 ② 계획 평가 및 환류장치 마련 ③ 기본 현황 조사자료 제공
 ④ 계획 수립 예산 및 인센티브 지원 ⑤ 도·시·군 상호협의 기회 마련 ⑥ 기타()

9. 귀 시·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에서 사전에 준비해야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계획 수립 예산 확보 ② 지역문화 현황 조사 ③ 주민 문화수요 조사
 ④ 기존 사업 평가 환류 ⑤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간 협의 ⑥ 기타()

E.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기대효과

10. 귀 사·군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지역문화 균형 발전 ② 지역 고유문화 발굴 ③ 주민 삶의 질 향상
④ 지역문화 기반 구축 ⑤ 문화재원 확보 ⑥ 기타()

◆ 다음은 응답자 소속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군명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2. 연구회의록

가. 개요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오후 1:00~3:00	
장 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발표자 (2인)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감독)
	토론자 (3인)	이찬영 (천안문화재단 행사기획팀장)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한수 (공주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운영 담당)
	연구진 (2인)	최영화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정원옥 (문화연대 집행위원, 공동연구진)

나. 내용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춘천시문화재단은 2008년에 출범하고 2009년 7월 1일에 2명의 민간 인력과 함께 시작하여 현재 30명이 근무. 초기에 문화예술지원사업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3개 시설과 시립예술단,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제외하고 시의 문화사업을 거의 전부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2010~2011년 즈음부터 재단의 역할, 지침, 방향을 큰 그림으로 제시할 필요가 생겨서 고민을 하게 됐고 2013년에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 예산이 없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이기는 하나 춘천이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도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그 방향 속에서 재단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방향을 정할 거다라는 논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 안의 내용도 문화재단의 중장기 계획이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춘천 도시가 가야할 방향들을 잡아내는 형태로 감. 또 우연치 않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가 선진계획이자 선제대응이 되었던 것임. 그 당시 참고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찾아봤는데, 당시에 서울, 경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에서는 성남을 제외하고는 없었음. 성남은 거버넌스 TF팀을 만들어서 2006년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선례 삼아서 춘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골격 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의 대략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재단의 역할을 만들어 감

- 2012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정책 비중이 높아짐. 정책 분야에서 다른 지역문화재단의 좋은 선례와 사례가 되고자 고민하며 좋은 정책을 담음. 한 가지 우를 범한 것은 당시 시립예술단 등 1개 예술단과 4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상위의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룸.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시설, 공간 운영 논리는 계획 안에 못 담아냈다는 우가 있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
-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이 나온 지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재단의 역할을 세우려고 함. 기본적으로 재단과 춘천이 나아가야할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별도로 가져가고 있음. 또 원주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이 됐고, 춘천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단의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맞물려서 내년도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실제 재단의 사업 부분은 이미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부에서 내려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지점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초기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과정 중임. 문화재단 계획 안에서 핵심은 사업비나 단위나 공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야할 방향을 크게 사람과 도시와 삶이라는 것을 놓고 그에 따라 기존사업을 재배열하고 빈틈들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세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실

행할 것인가 계획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얼마 전에 도에서 시행계획을 내라고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체계는 도에서 문화부의 기본지침(3대 추진전략과 9대 사업)을 내려주고 그에 맞춰서 각 시·군이 사업을 내라고 함. 18개 시·군이 사업을 내면 모아서 강원도의 시행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임. 저희도 일단 제출하기는 했으나 잘못된 방식 같음. 최소한 시·군 계획을 짜야 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도가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함. 예컨대 문화부가 보는 지점과 충남도가 보는 지점이 다를 것임. 그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문서를 모아서 짜집기해서 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음
- 재단이 있는 곳은 시행계획에 대한 인지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단이 없는 곳은 담당과에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천안은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계획이 다 같이 와있음. 그 안에서 재단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역 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원주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춘천도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이슈가 다르니까 이것들을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고민하면서 문화재단이 이것들이 일정 정도 코디네이팅을 하는 기능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음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감독)

- 원주문화재단은 2012년에 시청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젊은 직원 5~6명으로 시작해 국고사업을 추진했고, 국고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포럼을 하면서 원주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재단 직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함. 2015년 4월에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선발함
- 원주시는 2005~2015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원주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 또한 춘천의 사례를 참조함. <원주문화비전 2020>은 문화재단의 역할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인지 고민이 많았음. 정기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서 예총, 문화원, 일반 시민들, 예술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원주에 필요한 색깔과 정책, 전체적인 수요조사까지 해서 진행함. 다행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재단의 역할이 정착하게 되었음

- 지역에는 전문예술가들이 많지 않고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가가 나뉘져 있지 않음. 정말 전문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 10% 미만임. 그래서 비전을 고민하면서 원주문화비전에는 문화재단의 방향성 보다 생활문화, 지역의 문화향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용함. 예술가와 시민들이 문화재단의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계획의 목적은 재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체감하는 것임
-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예술행정을 만들 것인가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임. 전국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지역문화의 창조성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에 담아서 그것들을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통제하고, 표본 몇 개 뽑아서 장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에 대해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함. 재단은 예술가와 시민의 매개자 역할에서 어떤 포지션을 담을 것인가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봄
- 원주는 문화도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 내년부터 ‘그림책사업단’으로 연간 7억5천만원을 쓸 수 있음. 이게 문화재단으로 내려와서 시행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 하는 분들과 사업단 간의 갈등도 조정해야 함.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끼워 맞추는 식보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원주문화비전 2020을 만들면서 매달 1~2회의 포럼을 진행한 바 있음

■ 이찬영 (천안문화재단 행사기획팀장)

- 천안문화재단은 행정지원팀과 행사사업팀, 2팀 밖에 없는 상태이나 2012년부터 3년 단위 로드맵을 잡은 상태임. 천안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기본법 등이 만들어지고 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어줘서 좋은 케이스임. 재단이 사업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천안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임. 원주랑 다른 점은 천안문화재단은 문화원과 예총을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음

- 궁금한 점은,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임. 원주시의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 포럼, 용역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로 갔다면, 춘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함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춘천시도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의견을 듣는 구조가 가동이 되어서 포럼이라든지, 정례회의가 진행됨(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 감독: 저희도 용역을 줌)

■ 이찬영 (천안문화재단 행사기획팀장)

- 문화예술 단체들도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필요성도 느끼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영역을 구분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함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후자가 따라오는 구조가 좋음. 용역 안에 그런(거버넌스) 구조를 담으면 됨. 천안의 경우, 어쨌든 문화도시 때문에 별도로 문화도시 추진단 라운드 테이블이 가동이 될 텐데, 그 추진단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라운드 테이블에 문화재단이 꼭 들어가서, 천안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재단의 역할론이 나올 건데, 그 역할론과 문화도시가 가져갈 것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오시고, 그 계획 안에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넣어두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말고 시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춘천은

2011년 버전의 문화예술 중장기 시 계획이 있고, 원주도 2005년 버전의 시 계획이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 없는 이전 계획임). 그러면 시 담당 과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지? (원주는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임. 춘천은 문화도시 식으로 계획 수립 예정). 그 상태에서 과에서 현재 세워져 있는 재단의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변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지 궁금함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원주는 원주문화비전 2020을 만들 때부터 시와 교류가 많았음.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시 문화예술과에서 90% 수용함.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함. 시에서 통과되어 내년도 예산에 계획수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춘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재단이 세팅한 사업이 자체가 문화부에서 내려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틀과 다를 바 없음. 기본적으로 내년에 재단이 문화도시 사업 준비를 주도하게 되어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의 정책사업비 예산과 인력 2명을 확보한 상태임.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재단 안에 문화예술과 소속 국장 1, 사무관 1, 계장 2인이 근무하고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편임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당진시는 작년에 당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웠고, 그 내용에 빠져있는 부분인 당진시의 대표 축제와 하드웨어(시설) 부분 계획사업만 넣으면 됨. 당진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연구용역을 주던가, 시가 재단과 연구원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나 담당 계장이 바뀐 상황임. 그 후 미수립 시 패널티가 뭐냐는 질문이 나옴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법정계획이라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지만, 수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패널티가 없어서 강제력이 없음. 시 차원에서 문화도시 사업 등 큰 사업이라면 모를까 조그마한 국고사

업을 따오는데 아직은 패널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의무적이지 않음. 대부분의 행정에서 “해야한다”고 했을 때 안 해도 패널티가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행정 내부의 관습처럼 되어 버림. 패널티가 있는 것은 행자부 내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함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국고 신청란에 계획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게 하면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음.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서 계획 수립을 안 한 것에 따르는 패널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임

■ 이한수 (공주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운영 담당)

- 문화예술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행정에서는 감사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상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공주시의 경우 공주문화원이 있어서 동아리라든가 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박물관, 대학교, 예총에서도 지원사업을 수행 중임. 시에서는 축제나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하고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확고해야 함. 행정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해줘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 외에도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도 문화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음.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등에도 문화시설전문관리인력 채용하게 되어있으나 관 건물에서는 패널티,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채용하지 않음. 법에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 전문인을 두게 되어 있어도 세우지 않고 채용을 안 함. 행정 담당자가 이것이 아니면 징크 수준의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본인 일만 많아지게 되므로 안 하게 됨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당진 문예의 전당은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예컨대 시설전문인력이 없어서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행자부에 내는 것도 아니고 당진시에 내는 것임. 결국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내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최영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그동안 기초단위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본 적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면 큰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좋은 기회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확실히 좋은데, 이것을 세우게끔 유도를 하려면 중앙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해줘야 하고 시·도에서는 무엇을 해야할 지 논의 바람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현실적으로 중앙은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배제해야 함. 대신 도와 얘기를 잘 해야 함. 도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충남문화재단을 통하든 도에서 직접 하든, 15개 시·군에서 계획을 세웠을 경우, 그 중에 특화사업이 있으면 그에 한해서 보조해주되, 단 그 계획에 기초해서 세웠을 경우에 지원해준다고 옵션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있음. 만약 그 사업비가 크다 할 것임. 예를 들어 15개 시·군 중 3군데에만 문화재단이 있고 12개 시·군에는 문화재단이 없는데, 문화재단을 세우라고 해봤자 안 세우는데, 충남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생긴 곳만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주겠다고 하면 다 계획을 세우고 재단을 설립할 것임

■ 이한수 (공주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운영 담당)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각 지자체로 공문 하달을 할 때 무슨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이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서 보고를 해라라고, 장관이든 도지사든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면 공무원은 이행을 해야 함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그럴 경우, 상상되는 최악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계획을 세움. 지침을 보낼 때 공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만 인정하겠다는 제한사항이 없고, 계획 수립 예산도 없으면 공무원이 타 시·군 사례 받아서 짜깁기 하고 주변 교수 한 두 명 불러서 직접 계획을 세움

■ 최영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실질적으로 이 계획 수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들어간 지침이나 표본을 시·군에 내려주는 게 핵심적이라는 것인지?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그러함. 다만 지시사항과 함께 당근도 있어야 함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결국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의 문제임. 도에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담당자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해야 함. 우선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계획 수립 수요조사를 해야 함. 그리고 다시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줄 것인지, 자체수립을 할 것인지 파악하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여서 시·군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는 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면 잘 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도 있다면 타 시·군에서 따라감. 그게 도 문화예술과가 가져야할 과제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결국 충청남도가 좋아지는 것이므로, 의지의 문제임

■ **최영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게 사실상 문화자치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인데 위에서 하달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지침과 포맷에 따라서 광역 지자체가 계획을 만들어 올려 보내고, 또 기초 시·군에서도 도의 포맷을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런 방식이 옳을 것인가 의문스러움. 그러면 시·군에서 이 계획을 적극적,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함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그래서 도에서 워크숍을 해줘야 함.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함. 그나마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와 소통이 잘 돼서 하는 곳은 굉장히 우수한 곳임

■ **이한수 (공주문예회관 예술프로그램 운영 담당)**

- 도에서 시·군의 문화팀장, 과장급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해줘야 함. 그분들이 워크숍에서 가서 얘기를 듣고 이것이 시·군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에서 모여야 하는 주체들, 즉 행정과 재단, 예총, 민예총, 문화원, 기타 생활문화 단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판 자체를 만들어서 연구원에서 설명회를 해준다든지, 이 계획은 지역에서 거버넌스 구조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담당 과장만 교육시켰다고 해서 그 과장이 제대로 이해해서 지역에 가서 전달을 못할 수도 있음. 전파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도에서 판을 만들고 연구기관에서 설명회를 해주고 그 이후에도 연구기관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정원옥 (문화연대 집행위원)

- 결국은 누가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음. 계획을 누가 만들 것인가, 지역별로 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간의 편차가 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행정 수장이나 지역의 담당 주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게다가 중앙의 기본계획과 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발맞추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하면서도 시·군만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독자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의 문제도 있음. 이는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도 있음. 그리고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단에 대한 지역 내 인식과 재단의 역량도 확보가 안 되면,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행정적으로 관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듦
-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시·군·구에서 계획을 만들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계획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법이 지역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떤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듦.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왜 좋은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요점

과 효용을 정리해서 담당자가 이 효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담당자가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주체들을 모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결국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세울지 이미 계획을 세워보신 원주와 춘천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관점, 태도 등을 조언해주길 바람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다양한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좋음. 예총, 문화원, 민예총, 청년, 예술가 등 다양한 포지션의 얘기를 포럼을 통해서 얘길 듣고, 지역에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뭐고, 원주에서 꼭 필요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또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는지. 원주를 상징하는 색깔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음. 원주시는 독특하게 군사도시로서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원주가 변이되어 있는지도 포함함. 그리고 외부에서 원주를 바라보는 입장도 컨설팅과 조사를 시행함. 그걸 가지고 앞으로 2020년까지 원주시가 해야 할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발표하고 답했음

■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주체와의 조직화 자리가 된다는 것임. 두 번째로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투철한 사명 의식, 철학, 가치가 낮은 편임. 따라서 이런 자리가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지역의 예술가들과 주체들의 교육의 자리가 됨.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 패러다임, 방향, 쟁점을 바꾸는 계기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과정 안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맞게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함. 궁극적으로 그 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리더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함

■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연구에 문화재단이 없는 12개 시·군에 문화재단 설립 제안을 꼭 넣어 주길 바람. 문화재단 설립은 인구나 도시 규모의 문제가 아님.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함. 재단이

세워지면 국비를 수주하기도 더 수월해짐

■ **이재원 (원주문화재단 축제팀장)**

-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명인데 18개 시·군 중 기초 문화재단만 6개가 있고, 내년도에 수립 예정인 곳까지 하면 9~10개가 될 것임. 강릉문화재단이 기초 단위 재단으로는 국내 최초 재단임. 강원도 인제군은 인구가 2만명 정도고 군 부대 빼면 1만명 수준임. 그런데 인제문화재단은 사업도 엄청 커요. 기획공연도 워낙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임

□ 부록3.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

-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2014.1.28 제123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최영화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정원옥 문화연대 집행위원

전략연구 2015-30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글쓴이 · 최영화 · 정원옥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2월 31일 / 발행 · 2015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27-8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